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SOGILAW Annual Report

---

# 한국 LGBTI 인권현황 2020/2021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20/2021

---

## 단체 소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LAW) is a group of human rights lawyers and researchers working to advocate LGBTI people, to advance intellectual discussions on SOGI issues, and to bring changes to social and legal policies and systems so a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LGBTI people in South Korea. Founded in 2011, it has worked on numerous projects including lawsuits for the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survey studies on the lives and needs of LGBTI people and communities, and annual repor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people in South Korea.

---

Homepage [www.sogilaw.org](http://www.sogilaw.org)

Annual Report [annual.sogilaw.org](http://annual.sogilaw.org)

E-mail [sogilip.ks@gmail.com](mailto:sogilip.ks@gmail.com)

Phone +82 505 300 0517

[www.facebook.com/sogilaw.org](http://www.facebook.com/sogilaw.org)

## 주요 활동

2011년 8월	창립 (회장: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1년 9월 30일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주최(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2년 6월 1일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제작 도움(성적다양성을위한 성소수자모임 多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작)
2012년 10월 27일	“2012년,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2013년 3월 15일	[보도자료] 기존 성기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없이 성별정정 가능
2013년 7월 31일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주최(장하나·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8월 9일	[논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2013년 9월 14일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11월 19일	[논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2014년 3월 10일	인권재단사람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인권중심사람 입주
2014년 9월 30일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주최 (기사:“정의가 행해지기 위해 또한 보여져야 한다”, 한겨레21, 제1033호, 2014.10)
2014년 12월 23일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장애여성공감 공동 발표)
2014년 9~12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주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

2015년 1월 6일	비릿 문타본과 성소수자운동 활동가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5년 2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주최 (진선미 의원실 등 공동 주최)
2015년 8월	제1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2015년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 11월 27일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공동주최
2016년 2월	창비학당 1기 '성 소수자, 한국 사회를 질문하다' 출간
2016년 3월	회장 이·취임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6년 6월 22일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요건 개정과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
2016년 8월 20일	제2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2017년 2월 16일	[보도자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
2018년 2월 26일	[보도자료]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위한 지침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발간
2019년 8월 20일	[보도자료]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 환영한다

---

## 조사연구

2012년 6월~2014년 5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계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주 연구용역)
2014년 6월~2014년 12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2017년 6월~2018년 1월	직장 내 성소수자 친화적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구글, 인권재단 사람 발주 연구용역)

---

##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2014. 5. 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국문판 2015. 5. 17, 영문판 2015. 6. 28.) - 아름다운재단 지원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국문판 2016. 5. 17, 영문판 2016. 6. 11.) - 49통일평화재단 지원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국문/영문 합본 2017. 5. 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7 (국문/영문 합본 2018. 5. 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국문/영문 합본 2019. 5. 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 (국문 2020. 5. 17.)

한국 LGBTI 인권현황 2020-2021 (국문 2022. 7. 16.)

---

## SOGI인권아카데미

2016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1기(인권재단사람 지원)

2017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2기(인권도서관 冬花 지원)

2018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3기

---

## SOGI콜로키움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2013. 6. 29.)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2013. 8. 20.)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건을 중심으로 (2014. 4. 26.)

4회 균형법과 동성애 -균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2014. 5. 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5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 의미와 과제 (2016. 11. 19.)

---

## 법적 소송/신청 대리, 자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 (서울서부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 외 다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

**연대활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제LGBTI연합 (ILGA –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

## 발간사

SOGI법정책연구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이듬해 5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맞추어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이슈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제별로 작성되었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가 기록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5월에 발간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와 마찬가지로 영문판 및 인쇄본 발행 없이 국문판 파일로 발행하며, 2020년과 2021년의 2개년도를 합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모든 것이 주춤해진 듯한 시간동안에도 『한국 LGBTI 인권 현황』 발간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부 필진으로 다시금 참여해 주신 김지림 변호사, 송지은 변호사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널리 읽히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의미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7. 16.

3년만의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을 앞두고,

SOGI법정책연구회 일동

# 목 차

## I. 2021-2022 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 II. 2022 년 한국 무지개 지수

### III. 영역별 현황

1. 범죄화
2. 차별철폐와 평등
3. 고용
4. 재화와 서비스 이용
5. 교육/청소년
6.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7. 군대
8. 경찰
9. 구금/수용시설/난민
10.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1. 가족구성권
12. 보건/의료
13. 사회보장
14.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5. 혐오표현
16. 여론/미디어
1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8. 인권옹호자
19. 성별변경
20. 인터섹스
21. 조사/연구
22. 국제인권매커니즘

###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부록.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 I. 2020-2021 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2020 년과 2021 년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병 코로나 19 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다. 재난 상황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던 감염병 사태 초기인 2020 년 5 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성소수자 단체들의 빠른 대응과 언론인들의 자성의 움직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반성소수자단체의 혐오선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의 혐오표현도 보인다. 나아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차별행위와 소극적인 대응도 계속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소수자 광고 게재 거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 취소, 여성가족부의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용 도서 회수 결정,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젠더 부서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2020 년 초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여군으로써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힌 고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 여자대학에 합격한 한 트랜스젠더 여성 A 의 인터뷰로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 변희수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고, 여자대학에 입학이 결정된 A 는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였다. 2021 년 초, 고 변희수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연이은 트랜스젠더 활동가와 극작가의 죽음은 성소수자들이 처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2020 년과 2021 년에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총 4 건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도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거듭 촉구하였다. 2021 년 6 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 만인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으나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주도한 인사들을 패널로 세워서 사회적 논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진전하는 발걸음들이 이어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기자협회 등 각각 교육과 언론 영역에서 성소수자혐오를 포함하여 혐오표현에 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금속노조 모범단체협약안에는 성소수자 노동자 차별금지가 명시되었다. 또한, 의료 영역에서는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의과대학의 과목 개설, 대학병원의 젠더클리닉(트랜스젠더 의료) 개설  
소식들이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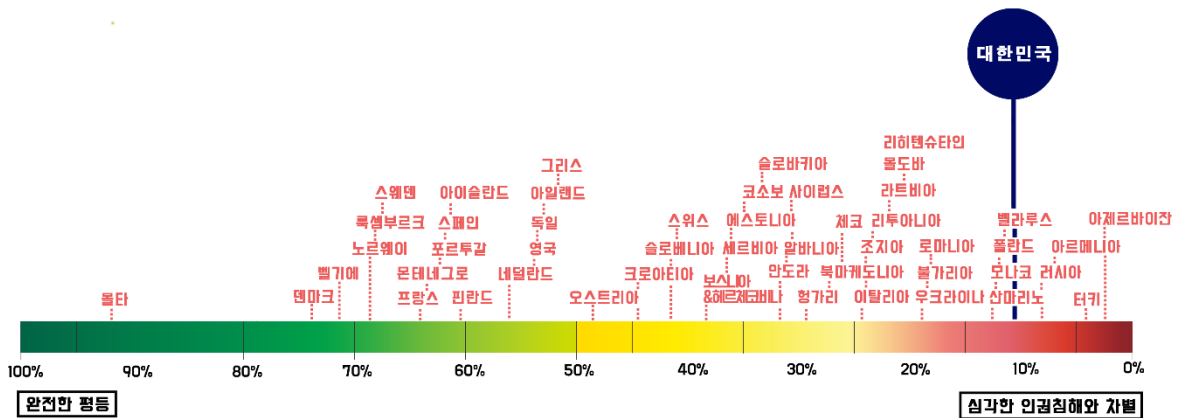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균형법」 제 92 조의 6 의 위헌법률심판이 다시 제기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우간다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을 내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수원가정법원은 '생식능력 제거' 없이 트랜스젠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인권 증진을 위한 많은 영역과 이슈들이 부침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조사들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주거권네트워크의 「성소수자 주거 실태와 주거 불안에 관한 연구」, 충남반차별교육문화공동체의  
「충남지역 성소수자 인권현황 조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성적 소수자의 노후 인식조사」,  
평동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등 성소수자의 생애주기와 공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II. 2022 년 한국 무지개 지수 [S. Korea Rainbow Index]

다음의 표는 「ILGA-Europe's annual Rainbow Europe Map and Index」와 「ILGA-Europe Rainbow Map(<http://rainbow-europe.org>)」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sup>1</sup>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의 무지개지수는 10.56%이다. 이는 2019년 8.08%보다 증가(2.48% 포인트)한 것이다. 주로 시민사회공간 영역에서 최근 3년 간 정부의 방해 등이 없었기에 포인트가 붙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를 봐야 할 것이다. 상대적 순위 면에서는 2019년에는 46위를 기록한 러시아(10.20%)보다 낮았는데, 2022년에는 45위를 기록한 벨라루스(12.06%)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8.45%), 아르메니아(7.50%), 터키(4.00%), 아제르바이잔(2.41%)이다. 상위국가로는 몰타(92.02%), 덴마크(73.78%), 벨기에(71.51%) 등이 꼽혔다.



<sup>1</sup> 이 지도와 지수, 설명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rainbow-europe.org/about>

● 전국적 적용[national/federal application]

◎ 일부지역에만 적용[applicable in some regions only]

평등과 차별금지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헌법(성적지향) [constitution(sexual orientation)]	
	고용(성적지향) [employment(sexual orientation)]	
	재화와 용역(성적지향) [goods & services(sexual orientation)]	
	교육(성적지향) <sup>2</sup> [education(sexual orientation)]	◎ 1.1
	보건/의료(성적지향) [health(sexual orientation)]	
	‘전환치료’ 금지(성적지향) [conversion therapy ban (sexual orientation)]	
	평등기구(성적지향) <sup>3</sup> [equality body mandate(sexual orientation)]	● 0.78
	평등정책기본계획(성적지향) <sup>4</sup> [equality action plan(sexual orientation)]	
	헌법(성별정체성) [constitution(gender identity)]	
	고용(성별정체성) [employment(gender identity)]	
	재화와 용역(성별정체성) [goods & services(gender identity)]	

<sup>2</sup>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 등은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sup>3</sup>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sup>4</sup> 한국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18-2022)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정책에 포함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등재할 것’,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정도이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교육(성별정체성) <sup>5</sup> [education(gender identity)]	● 1.1
‘전환치료’ 금지(성적지향) [conversion therapy ban (sexual orientation)]	
보건/의료(성별정체성) [health(gender identity)]	
평등기구(성별정체성) <sup>6</sup> [equality body mandate(gender identity)]	
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정체성) [equality action plan(gender identity)]	
헌법(성특징) [constitution(sex characteristics)]	
고용(성특징) [employment(sex characteristics)]	
재화와 용역(성특징) [goods & services(sex characteristics)]	
교육(성특징) [education(sex characteristics)]	
보건/의료(성특징) [health(sex characteristics)]	
평등기구(성특징) [equality body mandate(sex characteristics)]	
평등정책기본계획(성특징) [equality action plan(sex characteristics)]	
법률(성별표현) [law(gender expression)]	
헌혈 <sup>7</sup> [blood donation]	

<sup>5</sup>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sup>6</sup>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정체성은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sup>7</sup> 헌혈기록카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6호)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때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성간의 성접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에 있어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가족 (Family)	혼인평등 <sup>8</sup> [marriage equality]	
	동반자관계 등록(결혼과 유사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similar rights to marriage)]	
	동반자관계 등록(제한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limited rights)]	
	동거 [cohabitation]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 없음 <sup>9</sup> [no constitutional limitation on marriage]	● 0.75
	공동입양 [joint adoption]	
	동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입양 [second-parent adoption]	
	양친자격 당연인정 [automatic co-parent recognition]	
	인공수정(커플) <sup>10</sup>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couples)]	
	인공수정(싱글)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singles)]	
트랜스젠더의 부모 신분 인정 <sup>11</sup> [Recognition of trans parenthood]		
혐오범죄와 혐오 표현 (Hate crime and hate speech)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crime law(sexual orientation)]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speech law(sexual orientation)]	

<sup>8</sup>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에서는 동성 간 사실혼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sup>9</sup>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혼인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명시하는데, 한국 헌법상 이러한 혼인의 정의규정이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sup>10</sup> 2017년 개정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기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사실혼 부부도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동성부부는 현재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인공수정이 거부된다.

<sup>11</sup>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모' 기재는 변경되지 않는다.

	혐오 규제 정책(성적지향) [policy tackling hatred (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crime law(gender identity)]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speech law(gender identity)]	
	혐오 규제 정책(성별정체성) [policy tackling hatred (gender identity)]	
	혐오범죄 규제 법률(인터섹스) [hate crime law(intersex)]	
	혐오 규제 정책(인터섹스) [policy tackling hatred (intersex)]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과 신체 온전성 [Legal gender recognition & bodily integrity]	법적 수단의 존재 <sup>12</sup> [existence of legal measures]	● 1.5
	행정적 절차의 존재 [exist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개명 <sup>13</sup> [name change]	● 1.0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비이분법적 성별 인정 [non-binary recognition]	
	'성주체성장애' 진단/심리학적 소견 요건 없음 <sup>14</sup> [no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psychological opinion required]	

<sup>12</sup> 성별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법원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sup>13</sup> 개명은 트랜스젠더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sup>14</sup> 대법원 예규는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참고서면으로 규정한다.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 요건 없음 <sup>15</sup> [no compulsory medical intervention required]	
	강제적인 외과적 개입 요건 없음 <sup>16</sup> [no compulsory surgical intervention required]	
	강제적인 생식능력제거 요건 없음 <sup>17</sup> [no compulsory sterilisation required]	
	강제적인 이혼 요건 없음 <sup>18</sup> [no compulsory divorce required]	
	연령 제한 없음 <sup>19</sup> [no age restriction]	
	미성년자의 성별 변경 절차 [legal gender recognition procedures exist for minors]	
	비병리학 <sup>20</sup> [depathologisation]	
인터섹스의 신체 온전성 [Intersex bodily Integrity]	아동의 동의 없이 의료적 개입 금지(인터섹스) [prohibition of medical intervention before child is 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intersex)]	
	보편적 의료 개입 금지 [universality of prohibition of medical interventions]	
	효과적 모니터링 절차 [existence of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피해자의 사법절차 접근성과 보상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and reparations]	

<sup>15</sup> 대법원 예규는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참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sup>16</sup> 대법원 예규는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를 참고서면으로 규정한다.

<sup>17</sup> 대법원 예규는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를 참고서면으로 규정한다.

<sup>18</sup> 대법원 예규는 “19세 이상 행위능력자인지”를 참고사항으로 규정한다.

<sup>19</sup> 대법원 2009스117 판결은 현재 혼인 중이고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sup>20</sup> 통계청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F64.0 성전환증, 'F64.2 소아기의 성주체성장장애, 'F64.8 기타 성주체성장장애, 'F64.9 상세불명의 성주체성장장애를 진단명으로 두고 있다.



시민사회공간 [Civil society space]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공공행사 열림 <sup>21</sup> [public events held, no state obstruction(last 3 years)]	
	최근 3년간 충분한 보호 아래 공공행사 열림 [public events held, there is enough protection(last 3 years)]	● 1.5
	최근 3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단체들이 운영됨 <sup>22</sup> [associations operate, no state obstruction(last 3 years)]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위협에 처하지 않음 [LGBTI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at risk]	● 1.5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법률 없음 <sup>23</sup> [no laws limiting receipt of funding]	
	전국적/지역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 없음 [no laws limiting expression(national/local)]	● 1.33
난민 [Asylum]	법률(성적지향) [law(sexual orientation)]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적지향)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sexual orientation)]	
	법률(성별정체성) [law(gender identity)]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별정체성)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gender identity)]	
	법률(인터섹스) [law(intersex)]	
	법률/정책/다른 인정 수단(인터섹스)	

<sup>21</sup> 2019년 8월 부산해운대구청은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했다. 결국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열린광장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고 수리를 지연해왔으며, 2022년에는 조건부로 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했다.

<sup>22</sup>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시에 사단법인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는 “주무부서가 없다”, “조직위는 문화단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설립허가를 거부했다.

<sup>23</sup>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intersex)]	
계 [Total]		10.56%

### Ⅲ. 영역별 현황

#### 1. 범죄화

##### 수원지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2020. 2. 7.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송승용)는 군인·준군인이 군인·준군인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인정되어야 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sup>24</sup>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입법 추진

2021. 5. 2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싶었다”며 “얼마 전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2017년에 발생한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사건 모두 군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동성 간의 합의하에 진행된 성행위를 이성 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말했다.<sup>25</sup>

이후 2022. 4. 22. 제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혜영, 강은미,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류호정, 강민정, 권인숙, 윤미향, 이상민, 용혜인, 박주민 등 총 12인의 발의자로 「군형법」 제92조6를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조항 위헌 촉구 이어져

<sup>24</sup> 수원지방법원 2020. 2. 7.자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 결정

<sup>25</sup> 「용혜인 의원 ‘군대 내 동성에 처벌법’ 폐지 추진한다», <여성신문> 2021. 5. 20.자

2021. 12. 1.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자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죄가 반인권적이라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sup>26</sup> 2019.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전파매개행위 처벌조항(「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 제2호)에 관해 위헌 제청을 직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동법 제25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위 ‘전파매개죄’는 과학적 근거 없이 HIV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근거로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HIV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고 보건의료적으로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 역시 제기돼 왔다.

위 기자회견에 이어 2021. 12. 9.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국회의원 용혜인, 장혜영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은 국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sup>27</sup>

---

<sup>26</sup> 「"HIV감염인 인권 침해하는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폐지해야", <연합뉴스>, 2021. 12. 1.자

<sup>27</sup>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회의원 용혜인/국회의원 자혜영/기본소득당 베이직 페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2021 참조

## 2. 차별철폐와 평등

### 차별금지법안, 21대 국회 들어 4개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2013년 2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보수개신교계의 성소수자 혐오성 반대를 이유로 발의된지 2개월만에 철회되었던 사태 이후 7년만의 일이다.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평등(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네 법안 모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성별을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정의하여 성특징(sex characteristic)을 이유로 한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 네 법안은 또한 금지되는 차별의 범위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및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까지 포함시켜 차별을 폭넓게 정의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sup>28</sup> 위 조사에 이어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다.<sup>29</sup> 2021년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인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sup>30</sup> 한편 2021. 11. 2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열었으나 그동안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해온 보수개신교계 인사들을 반대패널로 섭외함으로써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에게 마이크를 쥐여주고 사회적 논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sup>31</sup>

### 법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화장실 이용 차별 인정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sup>32</sup>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아 특별인권교육수강을 권고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처분에 대해 피진정인이었던 해당 학원장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sup>28</sup> 「보도자료 -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19,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여”」,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23.자

<sup>29</sup> 「보도자료 -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자

<sup>30</sup> 「차별금지법 입법 청원 10만 돌파 청원 성립...“이제 국회의 시간”」, <경향신문>, 2021. 6. 14.자

<sup>31</sup> 「‘성소수자 혐오’ 판 갈아준 민주당」, <한겨레>, 2021. 11. 25.자

<sup>32</sup> 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19구합89043 판결. 양측의 항소 없이 확정됨

법원은 국비지원 미용학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인 진정인에게 8층 남자화장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다른 여성 수강생들과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진정인이 다른 수강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그것이 진정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진정인의 이 사건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해당 수강생이 차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미용학원 원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sup>33</sup> 법원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그 제한받은 기간이 5개월 이상에 이르러 원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하며 7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

<sup>33</sup>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소12475 판결. 양측의 항소 없이 확정됨

### 3. 고용

#### 금속노조 모범단체협약안 개정, 최초로 성소수자 노동자 차별금지 명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021.12.7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인권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강화한 모범단체협약안 개정안을 확정했다.<sup>34</sup> 개정된 모범단체협약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성소수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했으며, 현실의 다양하고 친밀한 관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에 따라 특별휴가, 경조 사비, 의료비, 수당, 돌봄휴가 조항 등에 새롭게 정비된 배우자, 가족 개념이 적용된다.<sup>35</sup> 금속노조는 ‘개정 모범단체협약안은 2022년부터 새롭게 설립하는 금속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안의 기준이 되며 다른 산별단위 노동조합의 모범단체협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up>36</sup> 노동조합 차원의 모범단체협약안에서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명시한 것은 이번 금속노조가 처음이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금속노조 모범단체협약 개정을 계기로 성소수자 친화적 노동 환경으로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sup>37</sup>

#### 방송-미디어 산업 쿼어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스탠바이 큐> 활동 시작

다양한 쿼어들의 삶을 다큐멘터리와 예능의 형태로 담아온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와 방송-미디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프로젝트 단체 <스탠바이 큐>를 만들고, 2020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sup>38</sup> <스탠바이큐>는 2020.8.25. 텀블벅 펀딩으로 프로젝트 출범을 알리면서, 미디어 제작 현장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고 특히, ‘쿼어 노동자’는 그 존재부터 가려져 있는 현실 속에서 미디어 노동 현장의 쿼어 존재를 알리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미디어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sup>39</sup> 2020년 활동을 통해 노동 현장내의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대나무 숲’을 운영했으며, 『성소수자 친

<sup>34</sup> 「[단독]성소수자 권리보장’ 첫 모범단체협약안... 동성커플 경조 휴가 생기나, <서울신문>, 2021. 12. 21.자

<sup>35</sup> 「남성 94%인 금속노조도 성평등 단협안 “국회·정부는 뭐하나”, <한겨레>, 2022. 2. 27.자

<sup>36</sup> 「금속노조 ‘모범단체협약’ 7년 만에 개정...인권·안전 대폭 강화’, <월간노동법률>, 2021. 12. 21.자

<sup>37</sup> 「성명-금속노조 모범단체협약 개정을 환영하며 -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2021. 12. 17.자

<sup>38</sup> 「“카메라 뒤에 쿼어도 있다” 성소수자 미디어노동자 운동 돌입, <미디어오늘>, 2020. 9. 7.자

<sup>39</sup> 「쿼어 프렌들리한 미디어 제작환경을 위한, ‘스탠바이큐’, 텀블벅 홈페이지, 2020. 8. 25.자 (2022. 6. 12. 최종방문) <https://tumblrbug.com/standbyq>

화적인 미디어 제작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sup>40</sup>

---

<sup>40</sup> 「방송 제작현장의 퀴어 노동자를 말하다, <스탠바이 큐>」, <ACT!>, 2021. 4. 9.자

## 4. 재화와 서비스 이용

### 서울교통공사, 반복적인 성소수자 광고 게재 거부

2020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BIT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에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이 광고물을 게재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였다. 광고는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성소수자 및 지지자들의 얼굴 사진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6월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광고 게재가 불승인되었다는 통보를 하였고 구체적인 심의 내역이나 불승인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재심의 결과 광고 게재가 승인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광고물은 7월 말 지하철역에 게재될 수 있었다.<sup>41</sup>

서울교통공사의 성소수자 광고 게재 거부는 그 후로도 반복되었다. 2021년 8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 -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 게재를 신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또다시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sup>42</sup> 202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위 광고 게재 불승인 행위는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의 근거가 된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 중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목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sup>43</sup> (14. 괴롭힘/폭력/혐오범죄 참조)

### 성소수자 행사 체육관 대관취소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7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인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퀴어여성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 4인은 2020.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sup>44</sup> 사건 당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퀴어여성네트워크에 동대문구 체육관을 대관해준 후 성소수자 혐오성 반대 민원이 들어오자 퀴어여성네트워크에 전화를 걸어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sup>41</sup> 「신촌역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 광고 걸렸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 광고... 서울교통공사 재심사 끝에 게시」, <오마이뉴스>, 2020. 8. 1.자

<sup>42</sup> 「서울교통공사,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전철광고 불승인」, <연합뉴스>, 2021. 9. 13.자

<sup>43</sup> 「보도자료 - 0000공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21. 10. 29.자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674100 결정)

<sup>44</sup> 「성소수자 단체, ‘퀴어여성 체육대회’ 대관 취소 동대문구에 손해배상」, <한겨레>, 2020. 1. 16.자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 다음날 체육관 천장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였다. 2019. 4. 10.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대관취소 행위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하였다.<sup>45</sup> 원고들은 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대관취소로 생활체육을 누릴 권리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2021. 8. 12. 1심 법원은 피고들의 대관허가 취소가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sup>46</sup> 원고들은 항소하였다.

---

<sup>45</sup> 국가인권위원회 2019. 4. 10.자 17진정0935400 결정. 자세한 내용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9』 중 재화와 서비스 이용 항목 참조

<sup>46</sup>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203834 판결

## 5. 교육/청소년

### ‘동성애 미화’ 등 국회의원의 혐오적 주장에 여가부,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용 도서 회수 결정

2020. 8. 25.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 문화 사업’의 몇몇 책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질책했다.<sup>47</sup>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 문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발간된 어린이용 도서들 중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남자다움, 여다자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을 선정해 학교, 도서관에 보급하는 문화사업이다.<sup>48</sup> 여성가족부는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인 2020. 8. 26. 보급한 도서 중 10권의 책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출간돼 아동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거나, 국제앰네스티 추천을 받거나, 세계 최고 권위의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책들”이라면서도, “문화적 수용성 관련 논란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은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정책을 독심 있게 추진할 책무가 있는 여가부는 인권의 다양성, 성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과 일부 혐오세력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않은 채, ‘문화적 수용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실질적인 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조장, 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과 닿아있다”고 강조하였다.<sup>49</sup> 이후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이 책들의 검색과 대출을 막은 것이 확인되었다. 노원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책 내용이 동성애 편향적이고 그림이 노골적이라 따로 분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sup>50</sup>

### 휴먼라이츠워치,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보고서 발간

2021. 9. 휴먼라이츠워치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앨러드 K.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국 성소수자 고등학생 및 최근 졸업생 26명, 일반 교사, 교직원, 학부

<sup>47</sup> 「동성애 문제삼은 의원 발언에 여가부 '나다움 어린이책' 7종 회수 결정」, <한국일보>, 2020.8. 26.자

<sup>48</sup> 「'나다움어린이책'이 공격당한 이유」 <뉴스앤조이>, 2020.9.26.자

<sup>49</sup> 「성교육 책 논란되자 회수한 여가부... 여성단체 “존재이유 망각”」 <KBS NEWS>, 202. 8. 31.자

<sup>50</sup> 「“선정적, 동성애 편향적”?... 도서관 금서가 된 '나다움 어린이책」, <한겨레>, 2020. 9. 12.자

모, 지원단체 활동가, 교육전문가 등 41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sup>51</sup>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특히 아동과 관련될 때 첨예하다.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보호와 차별금지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보호하면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지방 정부의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례에 반대했다. ‘며 한국의 현실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확인하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WEE 프로젝트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취약한 집단인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제외시키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는 것,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성소수자 관련 의무교육이 없고 성소수자에 대해 포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 뿐 아니라, 차별과 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up>52</sup>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포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 4. 1.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하면서 계획 내용에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하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소수자 학생 차별 예방 및 지원’ 내용에서 장애학생, 학생선수를 제외하곤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었다<sup>53</sup>.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지원, 학생과 교직원들의 성인식을 개선하고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성인권 교육 강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에 차별적이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sup>54</sup>.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 혐오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내용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 12.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자, 반성소수자 단체 등은 ‘성인지 개선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등으로 반대하며 계획안의

<sup>51</sup> 「청소년 성소수자 괴롭힘, 무대응과 차별 조장 정책의 산물, <한겨레>, 2021.9.14.지.

<sup>52</sup>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휴먼라이츠워치, 2021. 9. 14.

<sup>53</sup>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명시해 지원」, <한겨레>, 2021. 4. 1.자

<sup>54</sup>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 서울시교육청, 2021. 4. 1.

철회를 요구했고,<sup>55</sup> 조직적으로 민원 제기, 서울시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어 혐오집회를 지속했다.<sup>56</sup> 이에 대항하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은 ‘보수단체의 반대는 10년 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되풀이되는 레퍼토리라며 동성애 조장과 좌익 편향 교육 주장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원안 유지 및 강력추진을 촉구했고,<sup>57</sup>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청소년 성소수자 106명의 목소리가 담긴 요구안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하였다.<sup>58</sup> 결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확정되었다.

### 여자대학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입학 포기

성확정수술 및 성별정정 허가를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2020년 신입생으로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에 대한 언론 보도 후 학내 반대 여론 등이 불거지자 입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대학에 합격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숙명여자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지정성별 남성이 여자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고, 입학을 저지하기 위해 숙명여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지거나 학교 측에 생물학적 여성만 입학을 허가하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일었다. 숙명여대를 포함한 서울 지역 5개 여대를 포함한 21개 단체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sup>59</sup>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대학 합격을 축하하고 입학을 응원하는 여론과 트랜스젠더를 혐오, 배제하는 성명이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으나, 결국 트랜스젠더 여성은 ‘온종일 너무 무서웠다’며, 신상유출의 두려움이나 색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입학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sup>60</sup> 당사자는 숙대 입학은 포기했지만, 법학과 진학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2020. 2. 7. 온라인 커뮤니티에 ‘숙대 입학을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일상을 보호해주기를,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그런 길 만이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sup>61</sup>

55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성 정체성 강요 아니야”... 청원에 답변」, <경향신문>, 2021. 2. 15.자

56 「이른 아침, 서울시교육청에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이 도착했다」, <한겨레>, 2021. 4. 7.자

57 「“동성애, 좌익편향 교육, 허황된 얘기...서울 학생인권계획 추진해야”」, <뉴스1>, 2021. 1. 25.자

58 「조희연 교육감님,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켜주세요」, <여성신문>, 2021. 3. 5.자

59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생 결국 입학 포기」, <BBC NEWS 코리아>, 2020. 2. 7.자

60 「숙대 트랜스젠더 합격생 결국 입학 포기 “신상유출 등 무서움 컸다”」, <한겨레>, 2020. 2. 7.자

61 「숙대 입학을 포기합니다」, <오마이뉴스>, 2020. 2. 7.자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결과, '5년간 청소년 지원기관 성소수자 직무교육 0건'

2021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관련 현황'을 통해 최근 5년간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직무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실적은 민간단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가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성정체성에 따라 입소를 거부하지 않으며 가정 밖 청소년 누구나 입소 가능하지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이 2021년 6월 공개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경험과 고민' 보고서에 따르면 탈가정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47.4%가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없거나 입소가 불가능해서 쉼터에 가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sup>62</sup>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 10. 22.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기초적 부분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실태 파악, 상담자 교육, 매뉴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sup>63</sup>

---

<sup>62</sup> 「5년간 청소년 지원기관 성소수자 직무교육 '0건', 상담실적도 민간보다 저조», <경향신문>, 2021. 10. 21. 자

<sup>63</sup> 「'총체적 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실태 - 2021년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응하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2021. 10. 22.

## 6.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 6.1.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인권 침해 관련 각종 권고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각종 권고를 내렸다.

2020. 1. 21.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소속부대 승인하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하여 음경과 고환 결손을 이유로 한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하며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sup>64</sup> 육군본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 군대 참조)

2020. 4. 10. 트랜스젠더 등이 신원확인 과정에서 모욕·차별의 발생을 우려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선거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sup>65</sup>

2021. 3. 2.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교도소 입소 시 성전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성기 신체검사를 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 없이 내부적 판단으로 성별정체성과 다른 수용동으로 배정한 행위에 대해 차별 및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며, 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와 개별 교도소의 지침 점검을 권고하였다.<sup>66</sup>

2021. 4. 1.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관련 문의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트랜스젠더 내담자에게 경찰관이 “한동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 “용변을 참았다가 집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 등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진정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임을 인정하고 인권교육을 권고하였다.<sup>67</sup>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2. 9.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

<sup>64</sup> 「보도자료 - 인권위,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20. 1. 21.자

<sup>65</sup> 「보도자료 - 인권위, 선관위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 전달」, 국가인권위원회, 2020. 4. 10.자

<sup>66</sup> 국가인권위원회 2021. 3. 2.자 20진정0642800 결정

<sup>67</sup> 국가인권위원회 2021. 4. 1.자 20진정086140 결정

개선 방안을 담은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sup>68</sup> (21. 연구조사 참조)

### 정치인, 공무원의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그 해악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2021. 7. 22.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TV 토론에서 쿼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심에서 쿼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에 반대하는 발언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는” 발언이며 특히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언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정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종 선거 과정에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69</sup> 2021. 9. 2.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등으로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서 발언자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그 해악은 더 크다고 지적하며 제주도의회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70</sup>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쿼어문화축제를 ‘음란한 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 ‘퇴폐적인 축제’, ‘정서적인 폭력’ 등으로 묘사하며 서울광장에서의 쿼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차별을 확대·재생산해 차별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큰 해악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장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71</sup> (15. 혐오표현 참조)

### 그 밖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3. 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sup>68</sup>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 2021. 2. 9.자

<sup>69</sup> 국가인권위원회 2019. 7. 22.자 21진정0140600 결정

<sup>70</sup> 국가인권위원회 2021. 9. 2.자 21진정0016500 결정

<sup>71</sup> 국가인권위원회 2019. 7. 22.자 21진정0178600 결정

위 성명은 트랜스젠더 인권 관련 법정책의 미비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국내 상황, 변희수 하사를 비롯하여 2021년 초 사회적으로 알려진 트랜스젠더 세 명의 부고를 애도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72</sup>

국가인권위원회는 SBS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2021. 7. 22.자 의견 표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방송사에게는 방송프로그램 관련 개선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심의시 유의할 것을 권고하였다.<sup>73</sup>(16. 여론/미디어 참조) 2021. 8. 27.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 성별, 직장과 더불어 특히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sup>74</sup>(12. 보건/의료, 16. 여론/미디어 참조)

2021년 10월에는 서울교통공사가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행위에 대하여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중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sup>75</sup> (4.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 6.2. 지자체 인권기구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한 서울특별시에 권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1. 11. 1. 서울특별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하여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시장에게 불허가처분을 조속히 취소하고 향후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76</sup> (1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

<sup>72</sup>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1. 3. 31.자

<sup>73</sup> 국가인권위원회 2021. 7. 22.자 21진정0098000 결정

<sup>74</sup>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 결정

<sup>75</sup>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674100 결정

<sup>76</su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7. 군대

###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대한 강제전역처분과 이에 대한 취소 판결

2017. 3. 1.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복무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2019년 11월 소속부대 승인하에 의료목적으로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음경과 고환 결손을 이유로 전역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변희수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2. 14.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피해자의 전역 처분을 취소를 권고하고,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sup>77</sup> 이어서 2020. 1. 21.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를 결정하면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이를 거부하고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가 부적법한 자'로 판단하여 전역처분을 결정했다. 2020. 7. 3.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강제전역에 대한 인사소청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에 2020. 8. 11. 변희수 하사는 전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sup>78</sup>

그러나 2021. 3. 3. 변희수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021. 10. 7.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유족이 수계한 위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에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포기를 지휘하면서 위 판결은 확정됐다.<sup>79</sup> 한편, 2021. 12. 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할 것을 발표하였다.<sup>80</sup>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하여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불일치'로 변경

2021년 2월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성선호장애'를 삭제하고,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불일치'로 변경하였다. 또한 '성별불일치'의 판단기준과 방식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경도' (4급) 기준을 삭제하고, '고도'인 경우 기존과 같이 5급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인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sup>77</sup> 국가인권위원회 2020. 12. 14.자 20진정05650 결정

<sup>78</sup> 장서연 외, 「2020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2020 한국인권보고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385-387쪽 참조

<sup>79</sup> 장서연 외, 「2021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2021 한국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481-482쪽 참조

<sup>80</sup>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고 변희수 하사 '숨진 원인' 직권조사」, <한겨레>, 2021. 12. 14.자

판단한다.'고 그 판단방식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는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국제질병분류 제 11판을 개정하면서 채택한 용어로,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상태가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를 수용하고 나아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낙인(stigma)을 줄임으로써 트랜스젠더의 보건의료 접근권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sup>81</sup>

---

<sup>81</sup> 홍성수 외,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41쪽 참조

## 8. 경찰

### 경찰관인권강령에 '성적지향' 명시하지 않고 제정

2020. 6. 10.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차별금지 조항에 초안과는 달리 '성적 지향'이 명시되지 않고 제정되었다. 경찰은 2017 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기존 시행 중인 '경찰인권보호 규칙'의 상위 개념에 위치하는 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이 강령은 총 10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6 조에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으로 명시하여 당초와는 달리 성적 지향이 포함되지 않았다.<sup>82</sup>

---

<sup>82</sup> 「경찰관인권강령, 초안과 달리 '성적지향' 따른 차별 빠져」, <헤럴드경제>, 2020. 6. 10.자; 「김창룡 “경찰 인권행동강령 매뉴얼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명시”」 <서울신문>, 2020. 7. 20.자

## 9. 구금/수용시설/난민

###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내부지침 공개

시민단체의 잇따른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법무부의 '(2019년 7월 기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및 '(2020년 4월 기준) 성소수자의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내부지침이 각 공개되었다.<sup>83 84</sup> 수정 전인 2019년 안은 '여장남자(shemale)/남장여자(hefemale)' 등의 부적절한 용어사용, 사실상 모든 생활에서 성소수자 수용자 격리수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수정된 2020년 안은 본인의 의견, 신체적 성, 성별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용, 일반수용자와 공동생활 시 혼거 운동 등 개선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나, 여전히 '성소수자 수용자 거실 주변 통행 제한', '시선 노출 방지' 등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성기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보호실이라는 독방에 보호되고 있는 바, 성소수자에 대한 적절한 수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 우간다 성소수자 난민 인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의 난민신청인정률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에 불과하며, 그 중 성소수자난민의 인정률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이다.<sup>85</sup> 지금까지 대법원은 성소수자난민이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한 바 있으나 단 한 차례도 난민인정을 한 사안은 없었다. 그런데 2017. 12. 22. 대법원은 처음으로 원심의 난민불인정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2018. 10. 12.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우간다 출신의 성소수자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sup>86</sup> 금번 판결들은 성소수자의 난민신청을 인정한 몇 안 되는 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성소수자가 박해의 공포로 인해 성적 지향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도 일종의 박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미래의 박해 가능성이 아닌 과거의 박해경험을 요구해서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sup>83</sup> [정보공개자료] 법무부 성소수자수용처우 및 관리방안, 천주교인권위원회, 2020. 11. 20.

<sup>84</sup> 법무부 성소수자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무지개행동, 2021. 8. 26. (2022. 7. 7. 최종방문) [https://lgbtqact.org/statement\\_210826/](https://lgbtqact.org/statement_210826/)

<sup>85</sup> 국내난민현황(2021. 12. 31. 기준), 난민인권센터 (2022. 7. 7. 최종방문) <https://nancen.org/2256>

<sup>86</sup>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 10.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폐지

2019. 4. 11.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2020. 12. 31. 을 시한으로 법을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sup>87</sup>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 12. 31. 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할 책무를 졌다.

그러나 2020. 10. 7.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14주 또는 24주의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것이었다.<sup>88</sup> 이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비판이 제기되었고, 642명의 성소수자가 연명한 <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해당 선언은 “정부의 형법/모자 보건법 개정안이 기존의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sup>89</sup>

이후 정부의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021. 1. 1.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sup>90</sup>

###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발표

2020. 10. 2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발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시민사회의 논의로 마련한 것이다.<sup>91</sup> 해당 법안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특징 등을 이유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제5조), 성별 확정 및 정정 관련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제20조),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재화의 이용 등에 있어 차별금지(제21조)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sup>92</sup>

<sup>87</sup>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sup>88</sup> 「'14주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여성계 "전면 폐지가 마땅"」, <뉴시스>, 2020. 10. 7.자

<sup>89</sup> 「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성소수자 선언자 642명 일동, 2020. 11. 4.자

<sup>90</sup> 「'낙태죄' 폐지 1년...여성은 여전히 죄인, 정부·국회는 방관」, <여성신문>, 2022. 4. 10.자

<sup>91</sup> 「“재생산권을 아시나요?” 낙태죄 폐지 ‘그후’를 위해, 직접 법안을 만든 이들」, <경향신문>, 2020. 12. 15.자

<sup>92</sup>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2020. 11. 4.자 (2022. 7. 7. 최종방문)

<https://srhr.kr/policy/?q=YToxOntzOjEYOlJrZXI3b3JkX3R5cGUlO3M6MzoiYWxsljt9&bmode=view&idx=6142616&t=board>

## 11. 가족구성권

###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소송 제기

2021. 2. 18.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었다가 취소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sup>93</sup> 소성욱, 김용민씨는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사실혼의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성욱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한 후 2020. 2. 2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sup>94</sup> 20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욱씨의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고 이전에 인정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인정을 무효화 하였다. 이 소송은 다시 부과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과 대리인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보호는 사회 보장과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 차원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동일세대 여부 같은 실질적 생활관계를 더 중요시했으므로 이들 부부도 실질적 가족으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여러 번의 심리 끝에 2021. 11. 5.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성욱씨는 증인석에서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당시) 저희 관계가 배우자로 떠서 엄청 놀라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전화 한통으로 권리가 박탈됐다. 저희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족을 꾸려 살아가는 부부다. 재판부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sup>95,96</sup>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동성커플의 배제

4. 27.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가족 다양성 포용'과 '평등한 돌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며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가족정책의 진전이 다소 포함되었지만<sup>97</sup> 여전히 동거·동성커플 등 법률 밖 관계를 법으로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이나 가족구성권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sup>98</sup>

여성가족부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하는 관계를 포괄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차후 과제로 미뤄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sup>93</sup> 「어느 평범한 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이유」 <경향신문> 2021. 2. 17.자

<sup>94</sup> 「건보공단,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다?」 <한겨레21> 2020. 10. 23.자

<sup>95</sup> 「차별에 맞선 어느 부부의 '특별한' 용기」 <일다> 2021. 11. 29.자

<sup>96</sup>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한겨레> 2021. 11. 7.자

<sup>97</sup> 「2025년까지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 받는다」 <한겨레> 2021. 4. 27.자

<sup>98</sup> 「[논평]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확정에 대한 입장」 <가족구성권연구소> 2021. 5. 2.자

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 성소수자 권리 보장하는 금속노조의 모범단협안

2021. 12. 7.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021년 모범단체협약안을 개정하면서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도록 하며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sup>99</sup>

모범 단체협약안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에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에 있는 동성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sup>100</sup>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조례의 발의와 심사보류

2021. 5. 28. 서울시 의회에서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외 24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sup>101</sup>이 9. 7.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과 동시에 심사보류되었다.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후속조례로서,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 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을 사회적 관계망으로 포용하는 상호공존의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2019년 사회적 가족 지원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등 3년이 넘는 준비기간과 관련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성안되었다.

심사보류의 의견을 낸 의원들은 시기상조 혹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했다. 소관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은 서울시 의회 안에서 논의의 진행이 불가능하다.<sup>102</sup>

<sup>99</sup> 「[단독]성소수자 권리보장' 첫 모범단협안... 동성커플 경조 휴가 생기나」 <서울신문> 2021. 12. 20.자

<sup>100</sup> 「[성명]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 동성커플도 배우자. 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2021. 12. 17.자

<sup>101</sup>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0-02481, 제안일 2021-05-28

<sup>102</sup> 「[공동논평]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2021. 9. 13.자

## 12. 보건/의료

### 성소수자 관련 단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결성하여 활동

2020년 5월 초 이태원의 한 클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성소수자의 도덕적 ‘문란함’이 집단감염의 원인이라는 방식의 보도가 이어졌다.<sup>103</sup> 당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아우팅의 불안을 겪었다.<sup>104</sup>

성소수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23개 단체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이하 ‘긴급대책본부’)를 꾸려, 성소수자가 아우팅의 두려움 없이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에 나서는 한편, 방역당국과 소통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활동에 나섰다.<sup>105</sup> 긴급대책본부는 자발적인 검진을 어렵게 만드는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및 동선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동료의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며, 인권침해사례 조사, 상담,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기고와 발표, 확진자와 격리자 집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sup>106</sup>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된 긴급대책본부의 활동은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막으면서 방역당국, 지자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공개 개선권고

2021. 8. 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가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sup>107</sup> 이 사건의 진정인은 2020년 5월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연령, 거주지, 직장명과 이태원 클럽을 포함한 동선 정보를 제공했고, 이 내용이 피진정인인 ○○시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고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피진정인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에 주목했다.

---

<sup>103</sup> 「코로나19: 혐오로 변진 이태원발 집단감염... 성소수자 김 씨의 이야기」, <BBC 코리아>, 2020. 5. 26.자; 「너네가 문제" 이태원 그후, 성소수자에 날아온 문자」, <중앙일보>, 2020. 5. 22.자

<sup>104</sup>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에 커진 혐오...숨죽인 성소수자들」, <연합뉴스>, 2020. 6. 8.자

<sup>105</sup> 기진 외,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2020; 「“클럽 발 코로나, 시간과의 싸움"...익명 검사, 전국 확대 검토」, <한겨레>, 2020. 5. 12.자

<sup>106</sup> 기진 외, 앞의 글

<sup>107</sup>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



인권위는 이태원 클럽에서의 확진자 발생 이후 “이태원 클럽의 성격과 방문자들의 성적지향성을 추 정케 하는 자극적인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진정인과 같은 방문자들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성적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경우 증상 발현 7일 전에 방문한 이태원 클럽 정보를 공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방역지침 에 따라 감내해야 할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음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 HIV 감염인 등 의료공백 조사

2020년 11월, 11개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 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공백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108</sup> 조사단은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설문조사와 49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피해자, 가족, 동료,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HIV 감염인, 쪽방 주민, 노숙인, 이주 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나 입원을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주력하여 병상과 의료진을 투입하면서, 공공병원에 의존해 온 사 회적 취약계층이 배제된 결과였다. HIV 감염인의 경우 대안적으로 수술가능한 병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고, 민간병원에서 적용할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었다.<sup>109</sup> 이에 조사단은 의료공공성 강화, 감염병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역할과 의무 규정 및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백에 대 한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취약한 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 민간의료기관과 사회구성원의 책무 등에 관하여 개선책을 제시했다.<sup>110</sup>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성소수자 의료 과목 개설

2021년 3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내 의과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성소수자 의료를 다루는 과목을 개설했다. ‘성소수자 건강권과 의료’라는 선택과목으로, 트랜스젠더를 중심으로 하여 성소수자의 의 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성소수자 건강권과 인권, 해외 의과대학의 LGBTQ 의료교육 과정, 성별정체성 진단 기준과 정신과적 상담, 성소수자 친화적 클리닉의 실제 운영 등이 교과과정 에 포함되었다. 담당교수인 윤현배 교수는 향후 서울대 의과대학 필수과목인 ‘인간사회의료’에 성소

<sup>108</sup>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서』, 2020.

<sup>109</sup> 「코로나19 위기에서 K-의료는 ‘공백’」, <건치>, 2020. 11. 27.자.

<sup>110</sup>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 앞의 글.

수자 관련 주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sup>111</sup>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학병원 젠더클리닉 개소

2021년 1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트랜스젠더와 간성 등 성소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인 젠더클리닉을 열었다.<sup>112</sup> 호르몬치료, 성별재지정수술, 정신과 진단 등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형외과, 내분비내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등 의료진이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였다.<sup>113</sup> 젠더클리닉에는 성중립화장실과 개별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공간을 개선하였다.<sup>114</sup>

젠더클리닉을 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황나현 교수는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WPATH)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클리닉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향후 병원 곳곳의 공간개선과 성별재지정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등 성소수자 의료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을 밝히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젠더클리닉의 운영이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sup>115</sup>

### 강동성심병원, 성소수자 친화적 진료환경 조성 활동

강동성심병원에서는 성형외과 김결희 교수팀이 2021년 1월 성별재지정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내원하게 되었다. 이에 병원은 직원대상 문화역량교육을 실시하고, 병원에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며, 모든 과에 성소수자 앨라이 의료진을 두고 성소수자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 친화적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김결희 교수는 국내 병원이 성소수자 진료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에 비해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성형외과 외에도 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up>116</sup>

---

111 「서울대 의대 '성소수자 의료' 수업 첫 개설... 그들의 눈물 닦아줄까」, <한국일보>, 2021. 3. 30.자.

112 「성소수자 문턱 낮춘 고대안암 젠더클리닉 "우리 환자, 우리가"」, <청년 의사>, 2021. 9. 15.자.

113 「우리 환자가 원정 수술 받지 않도록, 양지로 나온 젠더 의료」, <시사IN>, 2021. 8. 26.자.

114 「성소수자 문턱 낮춘 고대안암 젠더클리닉 "우리 환자, 우리가"」, <청년 의사>, 2021. 9. 15.자.

115 위의 글.

116 「대형병원에 '트랜스젠더 클리닉'...'산부인과에 맘 편히 갈 수 있어요」, <경향신문>, 2021. 3. 12.자.

### 13. 사회보장

#### 동성부부, 건강보험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한 동성부부에 대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인정하였다가 8개월 만에 취소했다. 당초 공단은 직장가입자 A씨의 신고에 따라 B씨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sup>117</sup>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sup>118</sup>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툰 국내 최초의 소송이다.<sup>119</sup>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법률혼 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배우자로 인정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로서, 공단의 안내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여 인정받았던 것이었다.<sup>120</sup> 하지만 공단이 두 사람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세 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마지막 변론기일에 원고측은 두 사람이 "실제 거주를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로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2022년 1월로 예정되었다.<sup>121</sup>

---

117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잃은 동성부부 "건보공단에 법적대응"」, <연합뉴스>, 2020. 11. 11.자;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한겨레>, 2021. 11. 7.자

118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 <한겨레> 2021. 2. 18.자

119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한겨레>, 2021. 11. 7.자.

120 「건보공단,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다?: 남성 직장가입자의 남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기」, <한겨레 21>, 2020. 10. 23.자.

121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한겨레>, 2021. 11. 7.자.

## 14. 괴롭힘/폭력/혐오범죄

###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 훼손 20대 남성 약식기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가 지하철 신촌역에 게시되었으나, 설치 이틀만인 2020. 8. 2. 20대 남성에 의해 찢어져 훼손되었다. 광고물은 날카로운 칼로 베어낸 듯한 흔적과 함께, 잡아 뜯은 듯 완전히 훼손되었고, 이후 다시 게시된 광고물 역시 칼로 찢기거나 검은 매직, 파란 물감이 칠해지는 등으로 총 여섯 차례 훼손됐다.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sup>122</sup>. 범인은 검찰에 의해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최초 훼손 이후 SNS에는 훼손된 광고를 ‘성소수자는 당신의 혐오를 이길겁니다’라는 문구로 재탄생시킨 이미지가 공유되었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및 시민들이 광고가 철거되고 남은 빈 광고판에 메모지를 통해 성소수자 혐오 반대 메시지를 적는 등 연대가 이어졌다.<sup>123</sup> 그러나 시민들이 붙인 메모지 역시 ‘성소수자’ 부분만 떼어지거나 찢기는 등으로 훼손되었다.<sup>124</sup>

한편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부터도 난항이었다. 무지개행동은 해당 광고를 5월부터 한 달 동안 홍대입구역에 게시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신청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관련 광고는 의견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사 외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시 거부를 통보하였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차별적 행정을 규탄했고,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무지개행동이 요청한 광고 게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광고 게시 결정 허가 통보를 전달하였다. (4.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sup>122</sup> 「신촌역 ‘성소수자 차별반대’ 광고, 한 사람이 6번 훼손했다」, <한겨레>, 2020. 9. 2.자

<sup>123</sup> 「성소수자 광고 찢긴 자리에 남은 ‘연대’... ‘당신의 혐오를 이길겁니다」, <한국일보>, 2020. 8. 3.자

<sup>124</sup> 「원상복구된 ‘성소수자 차별 반대’광고... ‘광고 훼손’ 남성 검거」, <오마이뉴스>, 2020. 8. 3.자



사진설명: 훼손된 광고판(위), 메모지로 만든 응원 문구 훼손 (아래)<sup>125</sup>

<sup>125</sup> 「'성소수자 차별 반대' 신촌역 광고판 훼손한 20대 남성 검거(종합)」, <연합뉴스>, 2020. 8. 3.자

## 15. 혐오표현

###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정치인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 빈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21대 총선 혐오표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혐오 표현은 모두 92건으로 파악됐다. 혐오표현 대상으로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동조합, 특정지역, 이주민, 세대별, 비경제활동인구, 이슬람,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특정시설에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성소수자에 관한 표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애인(14건), 여성(13건), 노조(11건) 등의 순이었다. 성소수자 혐오표현으로는 "청소년의 60%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 미래 세대가 죽는다면 이거는 나라의 재앙"(이동섭 당시 통합당 후보), "제 딸이 시집가는데, 신랑 입장하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박지원 당시 민생당 후보), "특별히 딱 하나 잡는다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이안숙 당시 기독교자유통일당 후보)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sup>126</sup> 이외에도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예비)후보자의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표명을 냈다.<sup>127</sup> (6.국가인권위원회 및 자자체 인권기구 참조)

### 자자체 의원,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문제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가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다.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6. 국가인권위원회 및 자자체 인권기구 참조)

2021.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은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피진정인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결정 심의를 앞두고 17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다수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2019년도에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에는 '2019년 성명서'가 혐오표현이 아니라 정상적, 건강한

<sup>126</sup> 「"21대 총선서 성소수자·여성 등 비하·혐오 표현 난무"」, <연합뉴스>, 2021. 2. 13.자

<sup>127</sup> 「성소수자 혐오해야 국회의원 당선된다? 정치인들의 얄은 셈법」, <MBC>, 2021. 3. 14.자

의사표현이며,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전국 도심에 성소수자 혐오 전광판 광고가 수일간 노출되

2021. 11.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담은 빌딩 전광판 광고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 개 지역에 노출됐다가 중단됐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게재한 광고 내용은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습니다! 동성애 가르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OUT!', '아이들이 병들게 됩니다!' '여성들이 위험해 집니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담고 있으며 수일간 게재되었다가 한 시민단체가 송파구청과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은 후에 게시가 중단되었다.<sup>128</sup>

### 더불어민주당 주최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혐오표현 빈발

2021. 11. 2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시민단체, 종교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패널을 제정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 재정 반대 패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비판이 금지될 뿐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적극 권장해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병든 성교육이 시행된다", "남성동성애로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30 대 남성 중심으로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져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대로 성소수자 혐오의 장이 되었다는 비판이 가해졌다.<sup>129</sup> (11. 차별철폐와 평등 참조)

### 동성애자 출입을 지정한 건물 안내문 논란

종로구 한 건물에서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건물 측은 화장실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시행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1. 7. 11 취재에 따르면 해당 공고문은 1 년이 넘도록 건물에 게시돼 있었으며, 취재 당시에도 여전히 부착된 상태라고 밝혔다.<sup>130</sup>

### 인공지능 '이루다', 혐오표현 등으로 서비스 중단

2020. 12. 출시된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혐오표현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이루다'는 실제 연인들의 대화를 기초로 스스로

<sup>128</sup> 「성소수자 혐오표현 광고 전광판 버젓이 휩쓸다 뒤늦게 중단」, <한겨레>, 2021. 11. 29.자; 「성소수자 혐오 광고, 차별금지법 제정 미뤄진 결과」, <레디앙>, 2021. 12. 3.자

<sup>129</sup> 「'성소수자 혐오' 경청한 민주당... "이런 모욕 또 없다"」, <미디어스>, 2021.11.26.자

<sup>130</sup> 「'동성애자 출입 금지' 써붙인 화장실...혐오 내몰리는 성소수자」, <아시아경제>, 2021.7.11.자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출시 3 주 만에 이용자 40 만 명을 넘기며 인기를 끌었으나, 장애인이나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 발언, 성적 대화 등이 논란이 되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였다.<sup>131</sup>

#### 교육과 언론 영역 등에서 혐오표현 대응 선언

2020. 5. 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전국 12,000 여 곳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원 및 연수원 등에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가 배포되었다. 이 안내서는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sup>132</sup>

2020. 1. 16.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혐오표현의 사례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33</sup>

또한 2021. 1. 13. 카카오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수립>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운영정책 내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의 15 번째 조항을 '출신(국가, 지역 등) · 인종 · 외양 · 장애 및 질병 유무 ·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 종교 · 연령 · 성별 · 성 정체성 ·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 ·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로 수정하였다.<sup>134</sup>

---

<sup>131</sup> 「혐오 발언에 성적 대화까지...AI 챗봇 '이루다' 잠정 중단 」, <YTN>, 2021. 1. 12자

<sup>132</sup> 「보도자료-인권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혐오표현 인식개선 적극 나서」, 국가인권위원회, 2020. 8. 4.자

<sup>133</sup> 「보도자료-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 국가인권위원회, 2020. 1. 16.자;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2022. 7. 7. 최종방문)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6](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6)

<sup>134</sup>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수립」, 카카오 홈페이지 (2022. 7. 7. 최종방문)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9525>



## 16. 여론/미디어

### 16.1. 여론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성소수자 존중과 동등한 대우 73.6% 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 4.22.~4.27.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73.6%가 성소수자의 평등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sup>135</sup>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참여자의 25.1%는 매우 동의, 48.5%는 다소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1.1%가 ‘나도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6</sup>

#### 한국갤럽 여론조사, 동성결혼 법제화 38% 찬성,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 58% 동의

2021년 5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전국 성인 1,001명 중 38%가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sup>137</sup> 2019년 조사(35%)와 비교하면 찬성율이 3%포인트 증가했다. 20대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3%로 반대(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0대에서도 처음으로 찬성(52%)이 반대(38%)를 상회했다.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응답자의 81%는 동성애를 이유로 한 해고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58%로 2019년 조사(53%)보다 5%포인트 높아졌으며, 20대 86%, 30대 72%, 40대 65%, 50대 57% 등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에서 동의가 과반을 넘었다.

### 16.2. 미디어

#### <국민일보>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보도 확산

2020년 5월초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SNS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자, 2020.5.7. 국민일보는 “[단독]

<sup>135</sup> 「보도자료-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19,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여”」,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23.자

<sup>136</sup> 「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겨레>, 2020. 6. 23.자

<sup>137</sup> 「데일리 오피니언 제448호(2021년 5월 3주) -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이유, 동성결혼 법제화, 동성애 관련 인식」, 한국갤럽 홈페이지, 2021. 5. 21.자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는 제목으로 아우팅과 다름없는 기사를 보도했다.<sup>138</sup> 이 기사는 방역과는 무관하게 “게이클럽”을 부각하여 확진자의 성적지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고, 확진자의 직업과 근무지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지난 수년간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기사를 생산해 온 <국민일보><sup>139</sup>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성소수자 낙인찍기와 혐오 보도에 앞장 선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일보>의 단독보도 이후 이틀동안 ‘동성애’, ‘게이클럽’을 내세워 1,000여건의 유사한 기사가 쏟아졌고, <MBN>은 8개 주요 방송사 중 유일하게 2020.5.7 저녁종합뉴스 방송에서 “게이클럽 다녀간 뒤 확진…제2의 신천지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를 송출했다.<sup>140</sup>

많은 언론들이 <국민일보>의 보도가 인권침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국민일보>는 오히려 이 보도가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교회언론회의 입장을 실었다.<sup>141</sup> 2020.5.9.에는 “결국 터졌다…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를 “동성 간 성행위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찜방” 등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국민일보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2020.5.12. “그간 국민일보 동성애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과 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논란은 두 건의 기사에 의해 촉발됐지만 그 밑바탕에는 국민일보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태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sup>142</sup> 국민일보 차장기자단, 평가기자단도 2020.5.27. 논란에 된 기사에 대한 비판과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sup>143</sup>

<국민일보>를 시작으로 확산된 반인권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7개 단체는 2020.5.12.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대응, 인권침해 상담, 검진홍보 및 독려, 방역당국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sup>144</sup>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보도에 경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0.6.10. 제943차 심의결정에서 <강원일보>의 「게이가 알려주는 ‘블랙수면방’의 실체… “동물의 왕국이다”(2020.5.10.자)», <머니투데이>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년전 차마 못쓴 블랙수면방 취재기(2020.5.12.자)」 두 기사에 대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138 「신문방송모니터-코로나19마저 악용...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민주언론시민연합>, 2020.5.12.자

139 자세한 사항은 『한국LGBTI 인권현황 2015』 95쪽 참고

140 「신문방송모니터-코로나19마저 악용...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5. 12. 자

141 「국민일보, 강제 아우팅 비판에 “언론자유”」, <미디어오늘>, 2020. 5. 12.자

142 「국민일보 노조 “그간 동성애 관련 보도 자성해야”」, <미디어스>, 2020. 5. 13.자

143 「국민일보 차장기자단 “성소수자 혐오 논란에 반성”」, <미디어오늘>, 2020. 5. 29.자

144 「성소수자 단체, 코로나19 대책본부 출범 “용기 내 서로를 지키자”」, <비마이너>, 2020. 5. 12.자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 결정을 내렸다.<sup>145</sup> 또, 국민일보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2020.5.7)」를 포함해 이와 유사한 제목과 내용의 온라인 기사 29건과 조선일보 2020.5.9.자 A2면 「이태원 쇼크… 불금에도 불 꺼져/‘게이 골목’으로 불린 킹클럽 일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다.<sup>146</sup>

2021.1.28.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한해 차별금지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안이 110건으로 2019년(9건)에 비해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 방역 관련 보도를 하면서 방역과 무관한 ‘게이클럽’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 78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sup>147</sup>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교방송의 성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법정제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10.21. 방송소위를 열고 CTS 기독교 TV 의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이 성소수자를 ‘비윤리적·비정상적 존재’라고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제 ‘경고’를 결정했다.<sup>148</sup> 2020. 10. 28. 방송소위에서는 FEBC 극동방송의 프로그램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폭행을 해도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 이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제 ‘경고’를 결정했다.<sup>149</sup> 두 방송사에 대한 이 같은 제제는 2020.1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한 단계 감경되어 법정제제 ‘주의’로 확정되었다.<sup>150</sup> 심의위원들은 종교방송이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대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매체의 특수성과 이러한 안건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SBS,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 키스신 삭제 후 방영

2021.2.13. SBS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설연휴 기간 방영하면서 프레디 머큐리와 연인의 동성 키스신 두 장면을 삭제하고, 남성 보조출연자 간의 키스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SBS 측은 “가족 동반 시청했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 장면이고, 지상파 방송에서 직접적 동성애 장면을 내보냈다가는

<sup>145</sup>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2020. 6. 10.자

<sup>146</sup> 「신문윤리위, 코로나19 ‘성소수자 차별·혐오’ 기사에 경고」, <미디어오늘>, 2020. 7. 6.자

<sup>147</sup> 「보도자료- 언론중재위, 2020년 차별금지 위반관련 시정권고결정 크게 늘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1. 1. 28.자

<sup>148</sup> 「방통심의위, CTS 기독교TV “용납할 수 없는 방송” 법정제제 추진」, <미디어오늘>, 2020. 10. 21.자

<sup>149</sup> 「방통심의위, CTS 기독교TV에 이어 극동방송에도 법정제제 추진」, <미디어오늘>, 2020. 10. 28.자

<sup>150</sup> 「방통심의위원회 “성소수자 혐오한 종교방송 성역 아니다”」, <미디어오늘>, 2020. 11. 9.자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sup>151</sup>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21. 2. 13. 논평을 내고, SBS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취급하여 검열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으며,<sup>152</sup> 동성 간 키스신 편집이 “동성애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과 ‘사회통합’ 등의 항목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sup>153</sup>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9.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진정을 각하했다.<sup>154</sup> 다만, 동성키스신 삭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 SBS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KBS, 개정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차별방지 대상에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형태 포함**

2020.9.3. 방송의 날을 맞아 KBS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을 반영, 소수자 차별 방지 대상을 이주민과 외국인,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형태로 확대했다.<sup>155</sup>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1998년 KBS가 한국 방송사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2016년 3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

#### **KBS 「거리의 만찬-오버 더 레인보우」 편,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2019년 방영된 KBS 「거리의 만찬-오버 더 레인보우(성소수자부모모임)」 편<sup>156</sup>이 2020. 4. 2.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sup>157</sup>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심사평을 통해 “모든

---

<sup>151</sup>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동성애 장면 삭제한 SBS..“성소수자 차별” 비판 일어», <여성신문>, 2021. 2. 16. 자

<sup>152</sup> 「논평-SBS <보헤미안 랍소디> 동성 간 키스 장면 편집 방영은 명백한 차별이며 검열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2021. 2. 15.자

<sup>153</sup> 「성소수자단체 “‘보헤미안 랍소디’ 동성키스 장면 삭제는 차별” 인권위 진정», <한겨레>, 2021. 2. 19.자

<sup>154</sup> 「보도자료-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2021. 9. 1.자

<sup>155</sup> 「KBS, '2020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미디어스>, 2020. 9. 1.자

<sup>156</sup>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LGBTI 인권현황 2019』 48~49쪽 참고

<sup>157</sup> 「보도자료-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총 8건 선정»,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2020.4.2.자 (2022. 7. 7. 최종방문) <https://amnesty.or.kr/34356/>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위해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고 밝히고, 총 56건의 출판작 가운데 KBS 「거리의 만찬-오버 더 레인보우」편은 “성소수자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성으로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 다수의 심사위원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의료 기획,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2021. 3. 28. - 3. 31.에 걸쳐 보도된 한국일보의 기획기사 시리즈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sup>158</sup>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2021년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되었다.<sup>159</sup> 민언련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 지적하는 보도는 있지만, 이들의 건강권에 주목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점에서 이 기획의 차별성이 돋보였다고 설명하며, "성소수자 건강권,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등의 선정이유를 밝혔다.

#### A 언론사, <성소수자부모모임> 인터뷰를 동성애 혐오 기사의 일부로 보도

2020년 9월 A 언론사 기자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취지로 <성소수자부모모임>에 인터뷰를 요청, 두 차례 인터뷰를 한 후 2020. 9. 28. 인터넷 및 지면 신문을 통해 「“자녀의 동성애 커밍아웃에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느꼈죠”라는 제목으로 ‘가족이 탈동성애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sup>160</sup> 2020년 12월 <성소수자부모모임>과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는 A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합의에 따라 A 언론사는 2021. 6. 4. 자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언론사는 사과문을 통해 “애초 전달한 기획 의도와 다르게 혐오 관련 기사의 일부로서 보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뉴스앤조이>, 일부 반동성애 단체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표현한 기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반동성애 단체와 매체들이 교회개혁 저널리즘 단체 <뉴스앤조이>가 자신들을 성소수자에 대한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전하는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8.26. 대법원은 그러한 표현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sup>161</sup> 1심 재판부는 2020.1.15.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이

<sup>158</sup>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취약한 의료환경에 관한 시리즈」, <한국일보>, 2021.3.28.~2021.3.31.자 (2022. 7. 7. 최종방문) [www.hankookilbo.com/Collect/2273](http://www.hankookilbo.com/Collect/2273)

<sup>159</sup>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2021. 10. 8.자

<sup>160</sup> 「성소수자 부모 속여 ‘동성애 혐오’ 기사 쓴 언론 사과」, <미디어오늘>, 2021. 7. 4.자

<sup>161</sup> 「반동성애 진영과의 소송 8개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뉴스앤조이>, 2020. 8. 30.자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표현을 모두 삭제할 것과, 소송을 제기한 반동성애 강사와 매체 각각에 1,000 만원씩 총 3,000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나,<sup>162</sup> 2021.4.25. 항소심 재판부는 ‘가짜 뉴스 유포지’라는 표현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진실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된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그간 반동성애 단체들이 “얼마나 견제받지 않은 채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왔는지 확인”하게 된 데에 이 승소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sup>163</sup>

---

<sup>162</sup> 「반동성애 허위·왜곡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썼다고 손해배상 3000만 원을 맞았습니다」, <뉴스앤조이>, 2020. 1. 20.자

<sup>163</sup> 「반동성애 진영과의 소송 8개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뉴스앤조이>, 2020. 8. 30.자

## 1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

서울시가 2021. 9. 3.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함)의 비영리법인 설립신청에 관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sup>164</sup> 서울시는 조직위원회가 2020. 11. 26. 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무부서 지정에만 1년 넘게 소요하고, 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받는다면 허가를 미루다가<sup>165</sup> 최종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불허가 처분의 구체적 사유로 “1)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 2)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출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sup>166</sup> 이에 대하여 조직위원회는 2021. 10. 26.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sup>167</sup>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1. 11. 1. 서울시의 불허가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서울시장에게 불허가 처분을 조속히 취소하고,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sup>168169</sup>

### 국가인권위, 교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 22. 송실대학교가 교내 성소수자 모임의 “송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

---

<sup>164</sup> 「서울시, 퀴어문화축제 ‘비영리법인신청’ 불허...“공익 저해한다”, <경향신문>, 2021. 8. 26.자

<sup>165</sup> 「‘퀴어축제’ 조직위 법인 설립 신청...허가 미루는 서울시», <연합뉴스>, 2021. 5. 17.자

<sup>166</sup> 「오늘(2021.9.3.), 서울시가 굳이 구태여 애써가며 무려 당일특급으로 황급히 ‘오기’라 주장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다시 보낸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공문 수정본을 공개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공지, 2021. 9. 3.자 (2022. 6. 9. 최종방문)

<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7753937&t=board>

<sup>167</sup> 「퀴어축제조직위, ‘서울시 법인설립 불허가’ 행정심판 청구», <한겨레>, 2021. 10. 26.자

<sup>168</sup> 「서울시인권위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차별”», <한겨레>, 2021. 11. 3.자

<sup>169</sup>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2021. 11. 1.자

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하였다. 더불어 송실대학교 총장에게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70</sup>

피진정인 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설립한 종립대학이므로 ‘성소수자 환영’ 문구가 있는 현수막 게재의 거절은 종립대학의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자율성의 범위내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교육부의 인가를 통해 인정되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이에 따른 교육시설 운영은, 대한민국이 개인의 인격적 속성에 기반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인권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송실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내 성소수자 모임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중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sup>171</sup>

---

<sup>170</sup>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20. 1. 22.자 19진정204000 결정

<sup>171</sup> 「인권위 권고에도 ‘성소수자 현수막 안된다’는 송실대...교내 성소수자모임 “차별과 배제가 기독교 정신이냐”», <경향신문>, 2020. 4. 28.자



## 18. 인권옹호자

###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 속개 요구

6. 23. 교회와 시민사회 등 연대 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축복기도이동환목사처별재판규탄과성소수자차별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재판에서 정직을 당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심을 속개하고 교리와장정의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sup>172</sup>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 3조 8항을 근거로 교단 재판에 회부되었다. 2020. 10. 15. 1심인 경기연회 재판 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목회 정직 2년과 재판비용 704만 원 청구 판결을 내렸다. 공대위는 재판 결과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따른 재판비용 전가의 불공정과 비공개 재판 등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소심이 7개월째 지연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

<sup>172</sup> 「이동환 목사, 감리회본부 앞 무기한 농성 돌입...재판 속개 및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기 요구」, <뉴스앤조이>, 2021. 6. 21.자

## 19. 성별변경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대법원은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와 '조사사항'을 '참고서면'과 '참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성장환경진술서 등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에 대한 사항과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대법원은 개정 이유를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 수원가정법원, '생식능력 제거' 없이 성별 정정 허가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 2 부는 2021. 10. 13. 트랜스젠더 남성 A(21)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성기 성형수술은 성별정정의 필수요건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A 씨는 남성호르몬요법을 거치면서 외모와 목소리 등이 남성화됐고, 남성으로 생활해왔으며, 양측 유방전절제술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자궁난소적출술 등은 받지 않았다"며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는 "자궁적출술과 같이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sup>173 174</sup>

### 트랜스젠더단체 등, 성별정정을 위한 생식능력 제거 요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등은 2021. 11. 16.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부 성기·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06년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바뀌었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등을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는 2020년 2월 '참고사항'으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허가 기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고 단체들은 지적하였다.<sup>175</sup>

<sup>173</sup> 「법원, '생식능력 제거' 없이 성별 정정 첫 허가...'필수요건 아냐', <여성신문>, 2021. 10. 22.자

<sup>174</sup> 수원가정법원 2021. 10. 13.자 2020브202 결정

<sup>175</sup>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생식기수술'이 필수요건이라니요?», <한겨레>, 2021. 7. 9.자

## 20. 인터섹스

### 인터섹스 관련 기사가 간헐적으로 보도돼

인터섹스를 알리는 소개 기사 나 해외 소식을 담은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게재되었다. 미국에서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 발급을 시작하였다는 해외 소식<sup>176</sup> 이나 인터섹스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사<sup>177</sup>가 발행되었다.

---

<sup>176</sup> 「'성별 X'...美 국무부, 남·녀로 표시 안 된 여권 첫 발급」, <YTN>, 2021. 10. 28.자

<sup>177</sup> 「전 세계 1.7%는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으로 태어난다」, <한국일보>, 2021. 11. 13.자; 「섹스도 젠더도 스펙트럼이다」, <건강미디어>, 2020. 11. 13.자

## 21. 조사/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6개월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sup>178</sup> 2021. 2. 9.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 가운데 법적 성별정정을 한 응답자는 8%로 낮았으며, 86%는 의료적 조치비용, 법적절차, 건강상 부담 등의 이유로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5.3%에 달하고, SNS를 포함한 인터넷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이나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7.1%에 달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실태가 포착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땡동,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 발표

2021.6.26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sup>179</sup> 이 조사는 10대 시기 탈가정 경험이 있는 만24세 미만 성소수자나 탈가정을 고민하거나 계획해 본 10대 성소수자 153명을 대상으로 탈가정을 (고민)하게 된 원인, 탈가정 이후의 생활, 쉼터 등 주거시설 경험 등 67개 문항을 조사했고,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땡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가정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하게 되는 생존 방식이며,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거부와 학대, 가정폭력 경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상담·복지 체계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지원의 변화, 청소년 주거권 보장, 성별이분법적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sup>180</sup>

### 성소수자 주거권네트워크, 「성소수자 주거 실태와 주거 불안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만19세 이상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1년간 주거 실태와 주거 불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1.6.29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sup>181</sup> 조사참여자는 총 949명이며, 성소수자가 겪는 주거 불안을 중심으로 주거 현황, 이웃관계, 주거 부담, 이주 경력,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더해 17명의

<sup>178</sup> 「보도자료-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 2021. 2. 9.자

<sup>179</sup>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보고회」 열린다」, <비마이너>, 2021. 6. 25.자

<sup>180</sup>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땡동 홈페이지, 2021. 7. 6.자 (2022. 6. 12. 최종방문) <https://www.ddingdong.kr/xe/data/16773>

<sup>181</sup> 「성소수자가 집 소유 비율 낮고 '주거불안' 더 겪는다」, <일다>, 2021. 7. 9.자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했다. 성소수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상가족 틀에서 획일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편, 성소수자 커플의 파트너십 인정, 성정체성의 문제와 아우팅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공공기관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sup>182</sup>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 소수자의 노후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21년 ‘성적소수자의 나이듦’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30세 이상 성소수자 508명을 대상으로 나이듦과 죽음, 노후 준비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021.11.29 첫번째 포럼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sup>183</sup> 연구진은 설문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이하 대국민 조사)』와 비교했을 때,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성소수자 응답자들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순으로 응답(복수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sup>184</sup> 대국민 조사에서 돌봄을 포함한 건강(69.7%), 소득(63.1%), 고용 및 일자리(47.6%) 순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가 된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법으로는 25.2%가 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반차별교육문화공동체, 충남지역 성소수자 인권현황 조사

충남반차별교육문화공동체는 2021.6.25.부터 6주 동안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84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와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등을 모니터링했다.<sup>185</sup> 응답자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41.9%),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의 성소수자 배제 분위기(22.6%)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학교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해도 교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90.9%)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성소수자 차별은 수업 중 비하발언(45.0%), 비하표현이 담긴 수업자료 활용(23.3%) 등의 형태로 발생했고, 직장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해고(1건)나 암묵적인 사직압박(2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2건)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성소수자 인권현황 조사이다.

####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 발표

---

<sup>182</sup>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2021. 4., 150-151쪽

<sup>183</sup> <성적소수자의 나이듦에 관한 첫번째 포럼 - 무지개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페이스북, 2021. 11. 28.자

<sup>184</sup> 「성소수자 노년에 대한 상상...성소수자라서 더 불안할 것 65%」, <경향신문>, 2021. 11. 30.자

<sup>185</sup> 「충남 성소수자 차별 만연」, <대전일보>, 2021. 9. 15.자

2021.9.14.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앨러드 K. 로웬스타인 국제인권클리닉>은 한국 성소수자 학생들이 경험하는 괴롭힘 문제를 조사한 공동보고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을 발표했다.<sup>186</sup> 이 보고서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 26명, 교사와 학부모, 성소수자 지원서비스 제공자, 성소수자 활동가와 인권 옹호자 41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법적 의무와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기술했다.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괴롭힘과 희롱, 비밀이 보장되는 정신건강지원제도의 부재, 교과과정에서의 배제, 성적체성에 따른 차별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로서 국회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학내 괴롭힘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성소수자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비밀보장 원칙 하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sup>187</sup>

---

<sup>186</sup>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휴먼라이츠워치, 2021. 9. 14.자 (2022. 6. 12. 최종방문) <https://www.hrw.org/ko/report/2021/09/14/379591>

<sup>187</sup> 「괴롭힘과 차별로 고통받는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 휴먼라이츠워치, 2021. 9. 14.자 (2022. 6. 12. 최종방문) <https://www.hrw.org/ko/news/2021/09/14/379810>

## 22. 국제인권매커니즘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1. 12. 1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했다.<sup>188</sup> 사무소는 2007년 이래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지난 14년간 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 왔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up>189</sup>

### 故 변희수 하사 사건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및 독립전문가 애도서한

2020. 4. 군인권센터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사무소')에 변희수하사의 전역처분이 유엔 인권조약 침해임을 확인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사무소는 2020. 7. 29. 사건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사무소는 서한에서 "성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은 국제질병 분류와 배치"되며, "변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별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사무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남성 성기의 제거가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및 "전역심사위원회가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변하사의 심사 과정을 보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sup>190</sup>

2021. 3.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이후,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2021. 3. 23. 故 변희수하사의 유족과 친지들에게 "변희수님은 용감한 여성이었고, 평등과 비차별을 위한 싸움에 대한 투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용맹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줄 것이다"는 내용의 애도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sup>191</sup>

<sup>188</sup> OHCHR, Press briefing notes on Republic of Korea, 2021. 12. 17.

<sup>189</sup>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2021. 12. 20.

<sup>190</sup>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프레스리안>, 2020. 9. 29.자; 「[특보 SR] 변희수 하사 전역 관련 혐의서한 - UN's allegation letter regarding Transgender Soldier Ms. Byun」,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2020. 7. 19. (2022. 7. 7. 최종방문) <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532>

<sup>191</sup> 유엔 독립전문가 故변희수 하사 애도, 참여연대, 2021. 3. 23.

####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 2022년 6월 15일 현재, 시행일 기준

순서는 법령체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 구분하고 각 체계 내에서는 영역 - 법률명 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			
영역	법률명	연혁	내용
군대	군형법	<p>*1962년 제정</p> <p>*2009년 제92조를 제92조의5로 변경하면서 법정형을 징역1년에서 징역2년으로 상향조정. 2010. 2. 3. 부터 시행</p> <p>*2013년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면서 군형법상 성폭력 규정 역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대체 (국방부 의견 반영).</p>	<p>*과거에는 제15장(기타의 죄)에 제92조 (추행)로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군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까지 처벌함.</p> <p>* 2009년 개정법은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의5(추행)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형 상향 조정</p> <p>* 2013년 개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p> <p>*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2017년, 2020년 각 위헌 제청심판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p> <p>* 2022년 대법원은 영외에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p> <p>* 2022년 4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p>
수용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2007년 행형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항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관한 법률	신설  *2008년부터 시행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u>성적(性的) 지향</u>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관리구제로는 소장 면담과 청원 등을 규정(제116조 및 제117조)
수용시설 / 군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년 군형법 전면개정되면서 조항 신설  *2010. 5. 부터 시행	*조항만 약간 다를 뿐 위와 동일하게 규정(제6조, 제101조, 제102조)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년 제정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30조 조사대상 조항에서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이동	*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교육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제2조 3호)  *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1항)  *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 근거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3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별행위가 인정된 경우 구제조치, 시정, 징계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42조, 제44조 등)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u>성적(性的) 지향</u>,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p> <p>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p>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p>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p>
--	--	---

			<p>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p>
일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1.9. 제정 (2022.9.25. 시행 예정)	<p>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b>성적(性的) 지향</b>,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군대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1950년부터 시행  *2009. 12. 성전환자에 대한 규정 신설	<p>*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의 경우 전 시근로역으로 편입함(제136조)</p>

군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8년 단서조항 삽입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과 검사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나,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검사를 대체 (제8조 제2항 10호 단서)
군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별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p>*1978. 12.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증’을 심신장애 평가기준으로 도입</p> <p>*1999. 1.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로 용어 개정</p> <p>*2008. 2. 음경절단 항목에 성전환자 규정 삽입</p> <p>*2015. 10. ‘성주체성 장애’ 판단에 있어 전반적 기능평가척도 (GAF)를 기준으로 추가</p> <p>*2018. 2. ‘성주체성 장애’를 별도 항목 규정, GAF 기준 삭제 및 일부문구 수정</p> <p>*2018. 9. 경도, 중등도, 고도 3단계 분류를 경도, 고도 2단계</p>	<p>102의3.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주: 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인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p> <p>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p> <p>(※ 가.의 경우는 7급, 나.의 경우는 5급 판정이 내려짐)</p> <p>394. 음경절단 다.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주: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 부위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다목과 같이 판단한다.</p> <p>(※ 다.의 경우는 5급 판정이 내려짐)</p>

		<p>로만 나눔</p> <p>*2021. 2. ‘성주체성 장애’가 ‘성별불일치’로 개정되고 경도 기준 삭제, 고도인 경우 5급으로만 판정</p>	
출입국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p>*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인의 처우에 관한 규칙</p> <p>* 2015. 6.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소 내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 신설</p>	<p>* 제6조 제4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입소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와 소지품 검사에 있어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u>보호외국인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u>”고 규정</p> <p>* 제9조 제1항에서 보호시설의 방 구분으로 “환자, 임산부, <u>성적 소수자</u> 등을 위한 특별 보호방”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남자는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의 예외로 규정</p>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2019. 12.부터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u>성적(性的) 지향</u>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행정규칙 및 대법원예규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군대 / 수용시설	징계입찰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2011. 2. 제정	제5조(차별금지) 징계입찰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급·나이·종교·학력·출신지역·용모· <b>성적(性的)지향</b>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대	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	*2006년 2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2006년 4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제정  *위 <지침>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8년 국방부훈령 제898호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일부 수정, 격상  *2009년 <부대관리훈령>이 제정되면서 내용변경 없이 통합	*제4편(사고예방)의 제7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으로 실려 있음  *평등취급, 차별금지, 아우팅 제한, 교육 강화, 동성애자 병사의 모든 성적행위 불인정 등을 규정
군대	군 인권업무 훈령 (국방부훈령)	*2011. 7. 제정  *2017. 1.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추가	제16조 (교육내용) ① 병 및 간부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b><u>6. 성적소수자 인권보호</u></b>

<p>군대</p>	<p>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p>	<p>*2004. 10. 제정  *2018. 6.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추가</p>	<p>제5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계급, 직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 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 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b>성적 (性的) 지향</b>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군대</p>	<p>병적증명서 발급규정 (병무청 훈령) [별표1]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항목별 용어</p>	<p>* 2016. 1. 8. 일부개정으 로 병적증명서 상 처분 사유 기재 제외에 성전 환자 포함</p>	<p>2. 병역판정검사대상 공직자(등) 신고용 이외 ○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자-병역판정검사시 처분자 ⑥ 처분사유 또는 제외 * 제외사유: 수형, 고아, 혼인외의 출생 자, 혼혈아, 중학중퇴이하자, 성전환자 ○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자-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처분 변경 자 ⑨ 병역처분변경일자, 전기근로역 (처분 사유 또는 제외) * 제외사유: 수형, 고아, 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아, 중학중퇴이하 자, 성전환자</p>
<p>보건</p>	<p>헌혈기록카드 (보건복지부고시)</p>	<p>*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내에 서식으로 규정되 어 있었음  *2004년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동성과의 성 접촉’ 항목을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 접촉’ 항목으로 변경</p>	<p>* 최근 1년 이내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의 성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때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하여 <b>이성간의 성접 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에 있 어서 다르게 설정</b>  * 질병관리본부의 「헌혈기록카드 문진 항목 판정기준」에서는, “성접촉이라 함 은 깊은 키스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p>

		<p>*2009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고시로 변경</p>	
성별정정제도	<p>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p>	<p>*2006년 대법원 결정에 의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7년 제정</p> <p>*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여 2009년 개정</p> <p>*2011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p> <p>*2013년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하면서, 성별정정 허가신청 가능 연령을</p>	<p>*성별정정 허가신청과 허가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p> <p>*법원의 심리를 위한 참고서면과 참고사항을 규정</p> <p>“제3조(참고서면)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2. 신청인이 <u>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u></li> <li>3. 신청인이 <u>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u></li> <li>4. 신청인에게 <u>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u></li> <li>5. 신청인의 <u>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u></li> </ol> <p>제6조(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p>



		<p>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p> <p>*2019년 첨부서류에서 ‘부모동의서’를 삭제</p> <p>*2020년 제3조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으로, 제6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개정함</p>	<p>1. 신청인이 <u>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u>, 신청인에게 <u>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u> 여부</p> <p>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u>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u>을 받고 오히려 <u>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u> 여부</p> <p>3. 신청인에게 <u>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u> 여부</p> <p>4. <u>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u> 여부</p> <p>5. 신청인에게 <u>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u>으로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p>
<p>일반</p>	<p>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예규)</p>	<p>*2014.10. 시행</p>	<p>“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u>성적 지향</u>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표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p>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훈령)	<p>*2007년 해양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p> <p>*2018년 해양경찰청이 다시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 훈령으로 개정</p>	<p>*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과 더불어 ‘성적 소수자’라는 말이 들어간 행정규칙. 2018. 5. 14. 경찰청훈령이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바뀌며 성적 소수자가 삭제되었으나, 해양경찰청 훈령은 그대로 유지</p> <p><b>**제2조 4호에 ‘<u>성적 소수자</u>’ 정의규정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자”라고 규정</b></p> <p>*제4장(수사) 제3절(사회적 약자 보호)의 제56조(성적 소수자 수사)에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b><u>아우팅 제한</u></b></p> <p>*제4장(수사) 제4절(유치인 인권보장)의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4항에 “<b><u>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u></b>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p>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2006년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b><u>성적(性的) 지향</u></b>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2007년 시행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 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 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 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외국인, <u>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u>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해양경찰청훈령)	*2011. 9. 시행 *해양경찰청훈령이었 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 민안전처의 신설로 흡 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 령으로 개정 * 2018년 해양경찰청 이 다시 신설되면서 해 양경찰청 훈령으로 개 정	* 위와 동일하게 규정 * 과거에는 위 성적 소수자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경찰청훈령과 달리 명시되 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됨
수용시설	수용관리 계호업무 관한 지침 (법무부훈령) 및 등에	*2019.3. 개정 시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 함된 것으로 추정(전문 이 미공개로 정확한 연 혁 알 수 없음)	제39조(성소수자 처우) ① 소장은 <u>일반 인과 다른 성적 지향,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신입수용자(이하 “성소수 수 용자”라 한다)</u> 는 상담결과 및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 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p>②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 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p> <p>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성희롱, 성폭행 및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동.목욕 별도 실시 및 이동 시 단독 동행 등</li> <li>2. 수용거실 앞 칸막이 설치 등 계호시설 보강</li> <li>3. 기타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분리</li> </ol> <p>⑤ 소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하되, 두발 길이 등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p>
--	--	--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조례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교육	광역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0. 10.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b>성적지향</b>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광역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0. 제정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b>성적지향</b> ,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광역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1. 제정 *2017년 9월 혐오 표현 금지 규정 신설 *2019. 3. 성소수자 학생의 복지에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b>성적지향</b> , <b>성별정체성</b> ,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p>관한 권리 신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b>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b>(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b>성소수자 학생</b>, 일하는 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b>성소수자</b>,</p>
--	--	-----------------	--

				<p>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u>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u>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 <u>최초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등장함</u></p> <p>* 차별금지사유로서의 명시를 넘어 개인정보보호권, 소수자학생으로서의 권리 등을 명시</p>
교육	광역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2013. 6. 제정	<p>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u>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u>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u>성 소수자</u>, 학교부적응 학생 등</p>

				<p>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p>
교육	광역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2020. 7. 제정	<p>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u>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u>,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p> <p>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빈곤가정 학생, 장애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u>성 소수자 학생</u>,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미디어	기초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	*2018. 12. 제정	<p>“제5조(게시물의 관리)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p>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여야 한다.</p> <p><b><u>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한 경우</u></b></p>
미디어	기초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2017. 11.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12.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 11.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정선군 소셜네트워크 개설 및 운영 조례	*2019. 12.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철원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 9.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0.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미디어	기초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019. 5. 제정	*위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한 내용
아동청소년	광역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2012. 10. 제정	<p>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p>

				<p>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 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b>성적지향, 성별정체성</b>,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일반	광역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p>*2013년 조례 제정</p> <p>*2014년 시행규칙 제정</p>	<p>*조례에서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p> <p>*시행규칙에서 <b>“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b>”고 규정</p>
일반	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p>*2013년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p>	<p>*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p> <p>*시행규칙에서 <b>“차별행위”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b></p>

				<u>에 따른다.</u> ”고 규정
일반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2012. 9.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u>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u> 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1. 제정	제5조(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 <u>국가인권위원회법</u> 」등 <u>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u> 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시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2012년 조례 제 정  *2015년 시행규칙 제정	*조례에서 옴부즈만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에서 “ <u>차별행위</u> ”란 <u>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u> ”고 규정
일반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제정	제2조(기본이념) 모든 도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 <u>국가인권위원회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등 <u>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u> 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201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8.4.3. 도의회 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내용을 이유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 <u>국가인권위원회법</u> 」 등 <u>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u> 을 받지 아니한다.

			로 조례 폐지를 결의함  *2018.10.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가 다시 제정됨	
일반	광역시	충청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제정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u>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u> 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4. 제정	제6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u>성적(性的) 지향</u>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 2011. 5.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u>성적(性的) 지향</u>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2013년 조례 제정	*시행규칙에서 " <u>차별행위</u> "란 <u>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u>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0년 시행규칙 제정	<u>에 따른다.</u> ”고 규정
일반	기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u>성적(性的) 지향</u> ,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2015. 5. 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u>차별행위</u> ”란 <u>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u> ”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u>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u>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상담·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	기초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2. 제정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u>성적(性的) 지향</u>,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p>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인권증진에 조례 북구 관한	*2011. 1. 제정	<p>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u>성적(性的) 지향</u> 등을 이</p>

				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4.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b>성적(性的) 지향</b>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일반	기초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015. 5. 조례 제정  *2019. 3. 시행규칙 제정	*조례에서 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 접수, 상담, 조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규정함  *시행규칙에서 “ <b>차별행위</b> ”란 <b>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b> ”고 규정함
일반	기초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2.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군민은 인권을 존중 받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 <b>국가인권위원회법</b> 」등 <b>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b> 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인권의 침해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는 군수에게 그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절차	광역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서울특별시에규)	*2018. 5. 제정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b>성적(性的) 지향</b>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영역 - 단위 - 조례명 순



## 부록.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 단체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광주광역시 성소수자 모임 폴라리스 [twitter.com/gj\\_polaris](https://twitter.com/gj_polaris)

다움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dawoom-t4c.org](http://dawoom-t4c.org)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facebook.com/djsolongos](https://facebook.com/djsolongos)

동성애자예이즈예방센터 아이샵 iSHAP [ishap.org](http://ishap.org)

망할세상을 횡단하는 LGBTQI 완전변태 [wanbyun.org](http://wanbyun.org)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ACEtage) [blog.naver.com/acetage](http://blog.naver.com/acetage)

무지개인권연대 [facebook.com/LGBTdaegu](https://facebook.com/LGBTdaegu)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facebook.com/QueerInPusan](https://facebook.com/QueerInPusan)

비온뒤무지개재단 [rainbowfoundation.co.kr](http://rainbowfoundation.co.kr)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blog.naver.com/gender\\_voyager](http://blog.naver.com/gender_voyager)

성소수자 부모모임 pflagkorea.org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theshipnorthwest.tistory.com](http://theshipnorthwest.tistory.com)

신나는센터 [sinnaneun.org](http://sinnaneun.org)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cafe.naver.com/youthsexualright](http://cafe.naver.com/youthsexualright)

언니네트워크 [unninetwork.net](http://unninetwork.net)

울산 성소수자 모임 THISWAY [twitter.com/thisway\\_us](https://twitter.com/thisway_us)

월급쟁이 퀴어 모임 [twitter.com/Queer\\_workers](https://twitter.com/Queer_workers)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NGA/SF) [glocalactivism.org](http://glocalactivism.org)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www.transgender.or.kr](http://www.transgender.or.kr)

트랜스해방전선 [facebook.com/freetransright/](https://facebook.com/freetransrigh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net](http://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sangdam.org](http://lsangdam.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org](http://kscrc.org)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twitter.com/intersex\\_kr](https://twitter.com/intersex_kr)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knplusplus.org](http://knplusplus.org)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community.org](http://community.org)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gbtpride.or.kr](http://lgbtpride.or.kr)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aidsmove.net](http://aidsmove.net)

## 네트워크

군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 [gunivan.net](http://gunivan.net)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facebook.com/IDAHOinKorea](https://facebook.com/IDAHOinKorea)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facebook.com/rainbowrefugeeskr](https://facebook.com/rainbowrefugeeskr)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org](http://gagoonet.org)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http://lgbtact.org)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facebook.com/lgbtqsos](https://facebook.com/lgbtqsos)

퀴어여성네트워크 [facebook.com/queerwomen](https://facebook.com/queerwomen)

##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경남퀴어문화축제 [twitter.com/gyeongnamqcf](https://twitter.com/gyeongnamqcf)

광주퀴어문화축제 [facebook.com/gjqueerculturefestival](https://facebook.com/gjqueerculturefestival)

대구퀴어문화축제 [queer.or.kr/xe](http://queer.or.kr/xe)

부산퀴어문화축제 [facebook.com/busanqueerfes/](https://facebook.com/busanqueerfes/)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org](http://sqcf.org)

인천퀴어문화축제 [twitter.com/icqcf](https://twitter.com/icqcf)

전주퀴어문화축제 [facebook.com/jeonjuqcf/](https://facebook.com/jeonjuqcf/)

춘천퀴어문화축제 [facebook.com/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107843624696813](https://facebook.com/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107843624696813)

제주퀴어문화축제 [jejuqcf.org/](http://jejuqcf.org/)

## 문화/미디어

레인보우스토어 [rainbowstore.net](http://rainbowstore.net)

레인보우팩토리 [cinerainbow.blog.me](http://cinerainbow.blog.me)

레즈비언 공동체 라디오 방송 레주파 [lezpa.net](http://lezpa.net)

서울프라이드영화제 [spff.kr](http://spff.kr)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pinks.or.kr](http://pinks.or.kr)

생활착형비혼여성코스 아는언니들 [facebook.com/iknowusisters](https://facebook.com/iknowusisters)

친구사이 게이코스 지보이스 [chingusai.net](http://chingusai.net)

퀴어영화제 [kqff.co.kr](http://kqff.co.kr)

퀴어페미니스트 책방 꼴 [facebook.com/ccol.femi/](https://facebook.com/ccol.femi/)

햇빛서점 [sunnybooks.kr](http://sunnybooks.kr)

## 청소년

전복외고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땡큐(ThanQ) [twitter.com/JFThanQ](https://twitter.com/JFThanQ)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툴립연대(준) [blog.naver.com/youthtranskor](http://blog.naver.com/youthtranskor)

## 대학/청년

가천대학교 성소수자모임 GQ [twitter.com/gachonqueer](https://twitter.com/gachonqueer)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KQ [twitter.com/cuk\\_qs](https://twitter.com/cuk_qs)

감리교신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무지개감신 [facebook.com/rainbowmtu/](https://facebook.com/rainbowmtu/)

강원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담쟁이 [twitter.com/knudamj](https://twitter.com/knudamj)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더펠릭스 [twitter.com/cuethefelix](https://twitter.com/cuethefelix)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빅 [facebook.com/kguqvik](https://facebook.com/kguqvik)

경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Kivans [twitter.com/KNUKivans](https://twitter.com/KNUKivans)

경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Ubique [twitter.com/ubique\\_gnu](https://twitter.com/ubique_gnu)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AKHUARIUM [twitter.com/akhuarium](https://twitter.com/akhuarium)

계명대학교 계네들 [twitter.com/kyenedle](https://twitter.com/kyenedle)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queerkorea.org](https://queerkorea.org)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twitter.com/kmu\\_2km](https://twitter.com/kmu_2km)

나사렛대학교 퀴어동아리 켈라이 Quelly [twitter.com/knuQuelly](https://twitter.com/knuQuelly)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 [twitter.com/dkuqueer](https://twitter.com/dkuqueer)

단국대학교(천안) 성소수자 모임 DKUeers [twitter.com/D\\_Kueers](https://twitter.com/D_Kueers)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쿨 [twitter.com/ursoquod](https://twitter.com/ursoquod)

동덕여대 성소수자 모임 코튼캔디 [twitter.com/DDW\\_CC](https://twitter.com/DDW_CC)

배화여대 퀴어모임 큐알코드 [twitter.com/BWQUEER](https://twitter.com/BWQUEER)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twitter.com/diminor\\_](https://twitter.com/diminor_)

부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용사길드 [twitter.com/pknuqueer](https://twitter.com/pknuqueer)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OASIS [twitter.com/bistlgbt](https://twitter.com/bistlgbt)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케세라 [twitter.com/pnuqueer](https://twitter.com/pnuqueer)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facebook.com/sgDancingQ](https://facebook.com/sgDancingQ)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큰따옴표 [facebook.com/66quoutemark99](https://facebook.com/66quoutemark99)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twitter.com/queerinsnu](https://twitter.com/queerinsnu)

서울대학교 트랜스젠더 동아리 Trans In SNU [facebook.com/transinsnu](https://facebook.com/transinsnu)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 [twitter.com/kkimmeta](https://twitter.com/kkimmeta)

서울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SwuQ [facebook.com/SwuQueer0](https://facebook.com/SwuQueer0)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녹큐) [blog.naver.com/knockontheq](https://blog.naver.com/knockontheq)

성공회대학교 퀴어모임 RaIN [facebook.com/queerinskhu](https://facebook.com/queerinskhu)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퀴어홀릭 [facebook.com/qhsince1398](https://facebook.com/qhsince1398)

성신여자대학교 퀴어모임 Qrystal [twitter.com/qrystal\\_sswu](https://twitter.com/qrystal_sswu)

세종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IRIS [twitter.com/iris\\_sejong](https://twitter.com/iris_sejong)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Qhoot [twitter.com/smuqueer](https://twitter.com/smuqueer)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twitter.com/ssu\\_stranger](https://twitter.com/ssu_stranger)

아주대학교 퀴어 모임 DIP [facebook.com/AjouAndQueer](https://facebook.com/AjouAndQueer)

안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AYUQ [twitter.com/ayuqueer](https://twitter.com/ayuqueer)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twitter.com/queeryonsei](https://twitter.com/queeryonsei)

영남대학교 퀴어동아리 YuniQue [facebook.com/Yuni9ue](https://facebook.com/Yuni9ue)

용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폭스파이어 [twitter.com/foxfire\\_lgbtq](https://twitter.com/foxfire_lgbtq)

울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성소수자 동아리 무지개반사 [twitter.com/rainbow\\_eu](https://twitter.com/rainbow_eu)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blog.naver.com/ewhabyunnal](https://blog.naver.com/ewhabyunnal)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GALAXY [twitter.com/ewhagalaxy](https://twitter.com/ewhagalaxy)

인천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멘 [twitter.com/icqjccu](https://twitter.com/icqjccu)

인천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포커스 [twitter.com/incheonunivq](https://twitter.com/incheonunivq)

장로회신학대학교 퀴어 커뮤니티 무지개 장신 [facebook.com/pg/rainbowputs](https://facebook.com/pg/rainbowputs)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라잇온미 [twitter.com/lightsonme\\_](https://twitter.com/lightsonme_)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twitter.com/opendoor\\_jb](https://twitter.com/opendoor_jb)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귀여움 [twitter.com/jnu\\_qute](https://twitter.com/jnu_qut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피쉬 [rainbowfish.kr](http://rainbowfish.kr)

충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깡총깡총 [facebook.com/rainbowincsu](https://facebook.com/rainbowincsu)

충북대학교 성소수자 별별행동 2:30 [twitter.com/TwoThirty2018](https://twitter.com/TwoThirty2018)

포항공과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LINQ [twitter.com/POSTECHLINQ](https://twitter.com/POSTECHLINQ)

한국공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 사우르스 [twitter.com/TUKorea\\_QueerRS](https://twitter.com/TUKorea_QueerRS)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tech [twitter.com/koreatech\\_queer](https://twitter.com/koreatech_queer)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twitter.com/hufsouterplanet](https://twitter.com/hufsouterplanet)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퀴어로스페이스 [twitter.com/gaviatorkau](https://twitter.com/gaviatorkau)

한남대학교 페미니스트 퀴어 인권모임 HanQ [twitter.com/hnygay](https://twitter.com/hnygay)

한성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한우(Hansung Rainbow) [twitter.com/hansung\\_hanow](https://twitter.com/hansung_hanow)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twitter.com/hongbansa](https://twitter.com/hongbansa)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성소수자 동아리 EQUEL [twitter.com/kaist\\_equel](https://twitter.com/kaist_equel)

## 출판/아카이브

국제인권소식 통 [tongcenter.org](http://tongcenter.org)

바이섹슈얼 웹진 [bimoim.tistory.com](http://bimoim.tistory.com)

이체 : 이야기채집단 [blog.naver.com/chaezipdan](http://blog.naver.com/chaezipdan)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queerarchive.org](http://queerarchive.org)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transroadmap.net](http://transroadmap.net)

퀴어인문잡지 빼라 [notein-between.com](http://notein-between.com)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펍 [facebook.com/ferm.unninetwork](https://facebook.com/ferm.unninetwork)

해외 LGBT 소식 블로그 Mitr [mitr.tistory.com](http://mitr.tistory.com)

## 연구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blog.daum.net/lesbian2013](http://blog.daum.net/lesbian2013)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 [rainbowconnection.kr](http://rainbowconnection.kr)

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twitter.com/JSNqueerkorea](https://twitter.com/JSNqueerkorea)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runtoruin.com/2059](http://runtoruin.com/2059)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lgbtstudies.or.kr](http://lgbtstudies.or.kr)

LGBT상담연구회 [lgbt-kcpa@naver.com](mailto:lgbt-kcpa@naver.com)

SOGI법정책연구회 [sogilaw.org](http://sogilaw.org)

## 법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andlaw.org](http://hopeandlaw.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kpil.org](http://kpil.org)

## 상담/쉼터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동 [ddingdong.kr](http://ddingdong.kr)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chingusai.net/xo/main\\_connect](http://chingusai.net/xo/main_connect)

광주퀴어상담센터 큐앤아이 [twitter.com/qandiwithu](https://twitter.com/qandiwithu)

##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facebook.com/npplgbt](https://facebook.com/npplgbt)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justice21.org/go/rainbowrights](http://justice21.org/go/rainbowrights)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kgreens.org](http://kgreens.org)

## 종교

감리교 퀴어함께 [facebook.com/mwqueer](https://www.facebook.com/mwqueer)

기독교 퀴어모임 물꼬기 [facebook.com/equalchrist](https://www.facebook.com/equalchrist)

무지개예수 [www.rainbowyesu.org](http://www.rainbowyesu.org)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facebook.com/salowee](https://www.facebook.com/salowee)

크레파스 프로젝트 [www.krepas.com](http://www.krepas.com)



---

## 발간사항

발행일 2022. 7. 16.

발행 SOGI법정책연구회

편집 이승현

집필 김지림, 김지혜, 김현경, 류민희, 박한희, 송지은, 이승현, 장서연, 조혜인, 한가람